

'26년 상반기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목차

1. 입주자 모집 단지	2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4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7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26
5. 신청서류	28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32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33
8. 유의사항	38
9. 임대센터 위치안내	99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03
[붙임2]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105
[붙임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08
[붙임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109
[붙임5] 위임장	110
[붙임6] 각서	111
[붙임7]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112
[붙임8]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113
[붙임9]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114
[붙임1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115
[붙임11]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116
[붙임12]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117
[붙임13]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118
[붙임14] 각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119

'26년 상반기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4. 23.)

1. 입주자 모집 단지

- 수원광교 경기행복주택(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0)
-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77)
- 화성진안1 경기행복주택(경기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988-14)
- 화성진안2 경기행복주택(경기 화성시 병점구 효행로 1040번길 9)
- 가평청사복합 경기행복주택(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470번길 34)
- 양평공흥 경기행복주택(경기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70)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경기 파주시 황골로 90)
- 광고원천 경기행복주택(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49번길 40)
-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경기 하남시 덕풍동로 35)
-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06)
-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10길 20)
-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경기 광주시 광주역8로 14)
-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4)
- 평택BIX 경기행복주택(경기 평택시 황해희곡6로 36)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경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38)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경기 의왕시 부곡시장1길 38)
-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19번길 14)
- 성남하대원 경기행복주택(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4)
- 판교2밸리 경기행복주택(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7)
-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경기 평택시 고덕갈평3로 40)
-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경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7)
-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 안양도시형 생활주택(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
- 동탄2 신동포레 경기행복주택(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2길 66)
- 이천 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0)
-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02-1)
- 연천BIX 경기행복주택(경기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6번길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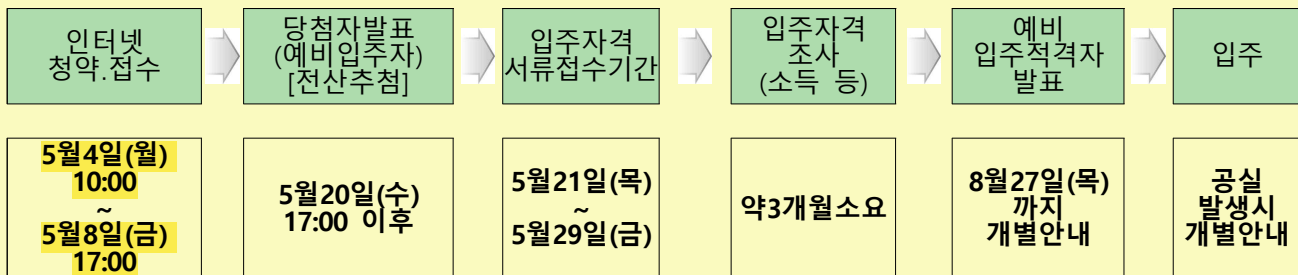
'19.0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예비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4.23.)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H에서는 콜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검증을 거쳐 적격자인 경우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효합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예비입주자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출생일 : 1986.04.24. ~ 2007.04.2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청년(자립준비청년)	- 청년(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청년(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청년 (주거약자)	- 청년(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 보호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신혼부부 한부모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약자)	- 주거급여수급자(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호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령자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생일 : 1961.04.23. 포함 이전 출생)
고령자 (주거약자)	- 고령자(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호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④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4.23.)』입니다.

■ 유의사항

- 우선공급대상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여성가족부의 요청(기관추천 별도 신청 필요)에 의하며, 접수기간에 본인이 청약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모집대상 주택은 입주자격 조사완료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격자 안내일로부터 지정된 입주기간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안내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gh.or.kr>)으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미성년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의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현장 접수 : [9. 위치 안내] 참조]
- 금회 임대대상은 타 임차인이 이미 거주 및 퇴거한 주택이 포함되므로, 생활 흔적 및 사용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의 경우 동일한 전용면적(소수점 제외)은 하나의 청약구분으로 구분 없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단지명	공급형		공급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대주거기간(년)	난방방식	건물층수	총세대수
	주택구분	청약구분		예비자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수광원교	36	36C	고령자	-	15	36.8300	22.2600	9.2400	20.5800	88.9100	20년	지연방	12층	204세대
	38	38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4	38.0000	22.9800	9.5400	21.2400	91.7600	10년			
	44B	44A	신혼부부	-	21	44.8900	26.7700	9.5400	25.0900	106.2900	10-14년			
		44B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4							10년			
안양관양	36	36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4	36.4000	18.1000	13.1800	-	67.6800	10년	개별방	9층	56세대
화성진안1	20	20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4	20.3300	16.2300	4.6000	-	41.1600	10년	개별방	5층	16세대
화성진안2	17	17A	청년	-	1	17.1200	14.1500	3.3300	-	34.6000	10년	개별방	5층	15세대
	20	20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3	20.0200	15.6800	3.8900	-	39.5900	10년			
가평사복합	44	44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2	8	44.1400	22.7485	7.3223	30.4386	104.6494	10년	개별방	7층	42세대
			신혼부부	-		44.1400	22.7485	7.3223	30.4386	104.6494	10-14년			
수영원동	22	22A1	대학생	-	5	22.3962	14.3013	7.4249	-	44.1224	10년	개별방	5층	100세대
		22B	고령자	-	4	22.0642	13.9778	7.3148	-	43.3568	20년			
	26	26A1	대학생	-	5	26.0522	16.3687	8.6370	-	51.0579	10년			
		26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2	13	26.1962	16.4729	8.6847	-	51.3538	10년			
안양평야	34	34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4	34.1600	18.3100	9.7600	-	62.2300	10년	개별방	5층	40세대
		34	고령자	-	1	34.1600	18.3100	9.7600	-	62.2300	20년			
파주원동	26	26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9	26.7900	18.8200	10.2000	-	55.8100	10년	개별방	6층	50세대
	35	35AB	고령자	-	5	35.0200	24.4800	13.3400	-	72.8400	20년			
		35A1, B1	신혼부부	-	14	35.0200	24.4800	13.3400	-	72.8400	10-14년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							10년			
광교천	26	26A	청년(자립준비청년 포함)	12	83	26.2500	14.6914	7.2336	16.6606	64.8356	10년	지연방	14층	300세대
		26B1	주거급여수급자	-	5	26.5200	14.8649	7.3080	16.8320	65.5249	20년			
		26B2	청년(주거약자)	-	1	26.5200	14.8649	7.3080	16.8320	65.5249	10년			
		26C	고령자	-	5	26.5000	14.8757	7.3025	16.8193	65.4975	20년			
하남동	18	18A1	대학생	-	4	18.9415	12.2710	5.3439	5.3439	41.9003	10년	지연방	17층	131세대

		18A4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2						10년							
	26	26A2	주거급여 수급자	-	1	26.9625	17.4673	7.6071	16.0745	68.1114	20년							
	36A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	36.9923	23.9452	10.4283	22.0360	93.4018	10~14년							
		36A1	청년								10년							
	44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	44.9484	29.1192	12.6816	26.7974	113.5466	10~14년							
다산 지급A5	18	18A2	주거급여수 급자	-	1	18.9415	9.9229	1.9003	9.5327	40.2974	20년	지역 난방	25~ 29층	2,078 세대				
		18A3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5	77						10년							
	26	26A5	고령자	-	1	26.9625	14.1249	2.7051	13.5694	57.3619	20년							
		26A6	주거급여 수급자	-	2						20년							
		26A7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9						10년							
		26B2	청년	1	3	26.7959	14.0376	2.6884	13.4855	57.0074	10년							
	36A3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76	36.9923	19.3632	3.7084	18.6018	78.6657	10~14년							
		3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5	76						10년							
	44A2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59	44.9539	23.5472	4.5097	22.6212	95.6320	10~14년							
		44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8	259						10년							
	동탄 호수공원	18	18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5	35	18.4624	10.6433	2.3070	8.7996	40.2123				10년	지역 난방	지하 2층~ 29층	995 세대
			18A3	고령자	-	2	18.4624	10.6433	2.3070	8.7996	40.2123				20년			
18A4			주거급여 수급자	-	2	18.4624	10.6433	2.3070	8.7996	40.2123	20년							
26		26	주거급여 수급자	-	1	26.4422	15.2435	3.3042	12.6029	57.5928	20년							
						26.5761	15.3207	3.3210	12.6667	57.8845								
		26B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17	26.4422	15.2435	3.3042	12.6029	57.5928	10년							
						26.5761	15.3207	3.3210	12.6667	57.8845								
26AB		고령자	-	6	26.4422	15.2435	3.3042	12.6029	57.5928	20년								
					26.5761	15.3207	3.3210	12.6667	57.8845									
36		36	주거급여 수급자	-	1	36.1396	20.8339	4.5160	17.2249	78.7144	20년							
						36.2643	20.9058	4.5160	17.2249	78.9110								
36AB1		36A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6	36.1396	20.8339	4.5160	17.2249	78.7144	10-14년							
	36AB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9	66	36.2643						20.9058	4.5160	17.2249	78.9110	10년			
44	44	주거급여 수급자	-	1	44.1269	25.4384	5.5141	21.0318	96.1112	20년								
					44.2519	25.5105	5.5141	21.0318	96.3083									
					44.7345	25.7887	5.5141	21.0318	97.0691									
44AB C1	44AB 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8	44.1269	25.4384	5.5141	21.0318	96.1112	10-14년								
					44.2519	25.5105	5.5141	21.0318	96.3083									

		44AB C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7		44.7345	25.7887	5.5141	21.0318	97.0691	10년			
경기 광주역	22	22A	주거급여 수급자	-	15	22.8301	11.6791	3.8600	16.5500	54.9192	20년	개 별 방	26층	500 세대
		22B	고령자	-	10	22.8301	11.6791	3.8600	16.5500	54.9192				
	36	36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4	36	36.9369	17.8208	6.2500	26.7800	87.7877	10년			
	44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	44.6973	21.5347	7.5600	32.4000	106.1920	10-14년			
안산 스마트 허브	16	1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27	16.7400	12.6810	4.7619	-	34.1829	10년	개 별 방	13층	232 세대
	21	21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27	21.8400	16.1041	6.2126	-	44.1567	10년			
평택BIX	16	1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13	16.6100	10.0013	4.7853	5.6318	37.0284	10년	개 별 방	18층	330 세대
	21	21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13	21.8400	13.1504	6.2921	7.4051	48.6876	10년			
오산 가장	21	21A,B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17	21.5000	13.3600	7.1700	17.6300	17.6300	10년	개 별 방	6층	50 세대
의왕역	29	29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4	16	29.4600	14.1800	4.5000	-	48.1400	10년	개 별 방	7층	50 세대
성남 판교	16	16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18	16.3900	13.9491	7.0056	23.8387	61.1834	10년	지 역 방	8층	300 세대
	26	26A2B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26	26.1800	21.4414	11.1901	38.0780	96.8895	10년			
		26A1	고령자	-	3	26.1800	21.4414	11.1901	38.0780	96.8895	20년			
성남 하대원	18	18A	고령자	-	1	17.9200	11.6800	2.8200	-	32.4200	20년	개 별 방	3층	14 세대
		18B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4	17.9200	11.6800	2.8200	-	32.4200	10년			
판교 2밸리	26	26C	고령자	-	3	26.7480	20.0340	7.2240	25.2630	79.2690	20년	지 역 방	지하 3층~ 12층	300 세대
	35	35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7	35.6030	26.0420	9.6160	33.6270	104.8880	10년			
		35B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7	35.1340	26.2260	9.4890	33.1840	104.0330	10년			
		35C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3	35.0460	26.1920	9.4650	33.1010	103.8040	10년			
평택 고덕	18	18A	대학생	-	2	18.5700	9.0857	2.6322	9.1578	39.4457	10년	지 역 방	20층	800 세대
		18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59	18.5700	9.0857	2.6323	9.1578	39.4458	10년			
		18A2	청년 (주거약자)	-	3	18.5600	9.0808	2.6309	9.1529	39.4246	10년			
	26	26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3	26	26.7300	13.0781	3.7889	13.1819	56.7789	10년			
		26A1-1	주거급여 수급자	-	16	26.7300	13.0781	3.7889	13.1819	56.7789	20년			
		26A1-2	고령자	-	3	26.7300	13.0781	3.7889	13.1819	56.7789	20년			
		26A2-1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약자)	-	1	26.7200	13.0732	3.7875	13.1770	56.7577	20년			

	26B	26B	청년	-	1	26.7300	13.0781	3.7889	13.1819	56.7789	10년			
	36	3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14	36.9200	18.0638	5.2334	18.2071	78.4243	10년			
		36A2	청년 (주거약자)	-	3	36.9200	18.0638	5.2334	18.2071	78.4243	10년			
	44A1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1	44.8100	21.9241	6.3518	22.0980	95.1839	10-14년			
44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8	44.8100		21.9241	6.3518	22.0980	95.1839	10년				
용인 죽전	17	17A1	대학생	-	3	17.7600	11.8015	5.5934	10.2903	45.4452	10년	개별 난방	7층	85 세대
	26	26A1	대학생	-	17	26.2500	16.7875	8.2672	15.2095	66.5142	10년			
		26A3	주거급여 수급자	-	3	26.2500	16.7875	8.2672	15.2095	66.5142	20년			
		26C	고령자 (주거약자)	-	1	26.5000	17.0020	8.3459	15.3543	67.2022	20년			
	36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	36.6100	24.1492	11.5300	21.2122	93.5014	10-14년			
		36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	36.7800	23.7107	11.5835	21.3107	93.3849	10-14년			
36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	36.2000	24.1687	11.4008	20.9746	92.7441	10-14년				
용인 덕덕	17	17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25	17.4867	16.7005	11.2315	15.6023	61.0210	10년	개별 난방	13층	106 세대
		17B	고령자	-	6	17.4867	16.7005	11.2315	15.6023	61.0210	20년			
		17C	고령자 (주거약자)	-	1	17.4867	16.7005	11.2315	15.6023	61.0210	20년			
안양 도시형	19	19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4	19.8600	11.5500	-	-	31.4100	10년	개별 난방	4층	24 세대
동탄2 신동포레	26A1 26A2 26B1 26B2	26A1	대학생	-	6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10년	지역 난방	지하 2층~ 20층	1,500 세대
		26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4	39	26.9294	13.3652	2.1134	14.4479	56.8559	10년			
		26B1	주거급여 수급자	-	7	26.9294	13.362	2.1134	14.4479	56.8559	20년			
		26B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4	33	26.9294	13.362	2.1134	14.4479	56.8559	10년			
	36A1 36B	36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3	117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10년			
		36B	청년 (주거약자)	-	7	36.5520	17.8421	2.8685	19.6106	76.8732	10년			
	44A	44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6	57	44.5022	22.0045	3.4924	23.8759	93.8750	10년			
	44B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0	44.4109	21.8863	3.4853	23.8270	93.6095	10-14년			
	44C	44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1	44.5748	21.1719	3.4981	23.9149	93.1597	10-14년			
	44D	44D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9	44.3458	21.8202	3.4802	23.7920	93.4382	10-14년			
	44E	44E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2	44.7423	22.7674	3.5113	24.0048	95.0258	10-14년			
	51A	51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0	51.9289	26.7472	4.0753	27.8605	110.6119	10-14년			
이천 하이시티	44A2	44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4	44.9800	14.3359	31.6368	-	90.9527	10년	개별 난방	지하 1층~ 17층	29 세대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4.9800	14.3359	31.6368	-	90.9527	10-14년			

	44	44C	고령자	-	3	44.9800	14.3359	31.6368	-	90.9527	20년			
양평 남한강	40	40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1	4	40.8400	20.3600	12.4200	-	73.6200	10년	개별 난방	지하 1층~ 4층	49 세대
		40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0.8400	20.3600	12.4200	-	73.6200	10-14년			
연천 BIX	25	25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6	63	25.2200	14.5700	6.0300	11.3400	57.1600	10년	개별 난방	5층	100 세대
		25A3	고령자	-	35	25.2200	14.5700	6.0300	11.3400	57.1600	20년			
	36	36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2	21	36.5900	20.3200	8.7400	16.4500	82.1000	10년			

※ 당첨자에 한하여 추후 센터별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계약 체결 후 입주 시점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 구분을 기준으로 계약 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형 청약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수원광교	36C	고령자		84,108	1,000	83,108	408,500	(+)	119,108	204,340
								(-)	42,108	531,000
	38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79,433	1,000	78,433	378,250	(+)	111,433	191,590
								(-)	40,433	492,000
			소득 있음	84,106	1,000	83,106	400,500	(+)	118,106	202,170
								(-)	42,106	523,00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8,209	1,000	107,209	501,570	(+)	150,209	256,570
								(-)	54,209	659,070
	44B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91,977	1,000	90,977	426,330	(+)	127,977	216,330
								(-)	46,977	557,580
소득 있음			97,388	1,000	96,388	451,410	(+)	135,388	229,750	
							(-)	49,388	591,410	
안양 관양	36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70,136	1,000	69,136	310,250	(+)	96,136	158,590
								(-)	35,136	412,330
			소득 있음	74,262	1,000	73,262	328,500	(+)	102,262	165,170
								(-)	37,262	436,410
화성 진안1	20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6,551	1,000	25,551	199,890	(+)	43,551	100,730
								(-)	13,551	237,800
			소득 있음	28,113	1,000	27,113	211,650	(+)	46,113	106,650
								(-)	14,113	252,480
화성 진안2	17A	청년	소득 없음	22,569	1,000	21,569	178,210	(+)	37,569	90,710
								(-)	11,569	210,290
			소득 있음	23,897	1,000	22,897	188,700	(+)	39,897	95,370
								(-)	12,897	220,780
	20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6,551	1,000	25,551	209,520	(+)	43,551	110,360
								(-)	13,551	247,430
			소득 있음	28,113	1,000	27,113	221,850	(+)	47,113	111,020
								(-)	14,113	262,680
가평 청사 복합	44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36,405	1,000	35,405	206,110	(+)	53,405	106,950
								(-)	18,405	258,610
			소득 있음	38,547	1,000	37,547	218,240	(+)	56,547	113,240
								(-)	19,547	273,6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4,169	1,000	43,169	250,150	(+)	65,169	127,650
								(-)	22,169	314,310
수원 영통	22A1	대학생		24,140	1,000	23,140	149,320	(+)	36,140	79,320
								(-)	12,140	184,320
	22B	고령자		26,980	1,000	25,980	167,190	(+)	40,980	85,530
								(-)	13,980	205,100
	26A1	대학생		28,560	1,000	27,560	168,460	(+)	42,560	86,800
								(-)	14,560	209,290
	26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8,560	1,000	27,560	168,460	(+)	42,560	86,800
								(-)	14,560	209,290
			소득 있음	30,240	1,000	29,240	178,670	(+)	45,240	91,170
								(-)	15,240	222,420
양평 하회	34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7,200	1,000	26,200	147,050	(+)	39,200	77,050
								(-)	14,200	184,960

단지명	공급형 청약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압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소득 있음	28,800	1,000	27,800	155,700	(+)	41,800	79,870	
			소득 없음					(-)	14,800	196,530	
	34	고령자	소득 있음	30,400	1,000	29,400	160,810	(+)	43,400	84,980	
			소득 없음					(-)	15,400	204,560	
파주 영북 복합	26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4,140	1,000	23,140	138,800	(+)	35,140	74,640	
			소득 있음	25,560	1,000	24,560	146,970	(-)	12,140	173,800	
	35AB	고령자	소득 없음	34,580	1,000	33,580	198,830	(+)	37,560	76,970	
			소득 있음					(-)	13,560	181,970	
	35A1,B 1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36,400	1,000	35,400	209,290	(+)	51,580	99,670	
			소득 있음					(-)	17,580	248,410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30,940	1,000	29,940	177,900	(+)	53,400	110,130	
			소득 있음	32,760	1,000	31,760	188,370	(-)	18,400	261,790	
			소득 없음					(+)	45,940	90,400	
			소득 있음					(-)	15,940	221,650	
광교 원천	26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51,680	1,000	50,680	215,330	(+)	48,760	95,040	
			소득 있음	54,720	1,000	53,720	228,000	(-)	16,760	235,030	
	26B1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없음	45,600	1,000	44,600	190,000	(+)	69,680	110,330	
			소득 있음					(-)	26,680	288,240	
	26B2	청년 (주거약자)	소득 없음	51,680	1,000	50,680	215,330	(+)	73,720	117,170	
			소득 있음	54,720	1,000	53,720	228,000	(-)	27,720	306,750	
	26C	고령자	소득 없음	57,760	1,000	56,760	240,660	(+)	77,760	124,000	
			소득 있음					(-)	29,760	322,320	
	하남 덕풍	18A1	대학생	소득 없음	31,408	1,000	30,408	117,900	(+)	41,408	59,570
				소득 있음					(-)	16,408	161,650
18A4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31,408	1,000	30,408	117,900	(+)	41,408	59,570	
			소득 있음	33,255	1,000	32,255	125,510	(-)	16,408	161,650	
26A2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없음	38,653	1,000	37,653	145,860	(+)	43,255	67,180	
			소득 있음					(-)	17,255	172,17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69,040	1,000	68,040	260,110	(+)	50,653	75,860	
			소득 있음					(-)	19,653	201,270	
36A1		청년	소득 없음	58,684	1,000	57,684	221,090	(+)	91,040	131,780	
			소득 있음	62,136	1,000	61,136	234,090	(-)	35,040	359,270	
			소득 없음				(+)	76,684	116,090		
			소득 있음				(-)	29,684	305,670		
			소득 없음				(+)	82,136	117,430		
			소득 있음				(-)	31,136	324,500		

단지명	공급형 청약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서)	잔금 (압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2,654	1,000	81,654	311,160	(+)	108,654	159,500
								(-)	41,654	430,740
	18A2	주거급여수급자		27,348	1,000	26,348	106,960	(+)	36,348	54,460
								(-)	14,348	144,870
	18A3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30,995	1,000	29,995	121,550	(+)	40,995	63,220
			소득 있음					32,818	1,000	31,818
(-)	15,995	165,300	(-)	16,818	174,280					
	26A5	고령자		48,498	1,000	47,498	189,610	(+)	64,498	96,280
								(-)	24,498	259,610
	26A6	주거급여수급자		38,288	1,000	37,288	149,500	(+)	50,288	79,500
								(-)	19,288	204,910
	26A7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43,393	1,000	42,393	170,170	(+)	57,393	88,510
			소득 있음					45,946	1,000	44,946
(-)	22,393	231,420	(-)	23,946	244,050					
	26B2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43,393	1,000	42,393	170,170	(+)	57,393	88,510
			소득 있음					45,946	1,000	44,946
(-)	22,393	231,420	(-)	23,946	244,05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8,554	1,000	67,554	268,620	(+)	91,554	134,460
								(-)	34,554	367,780
	36A3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58,270	1,000	57,270	228,670	(+)	77,270	117,840
			소득 있음					61,698	1,000	60,698
(-)	29,270	313,250	(-)	31,698	329,62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1,682	1,000	80,682	319,670	(+)	108,682	162,170
								(-)	41,682	436,330
	44A2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69,428	1,000	68,428	271,880	(+)	92,428	137,720
			소득 있음					73,512	1,000	72,512
(-)	35,428	371,040	(-)	37,512	392,870					
	18A2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2,189	1,000	21,189	91,600	(+)	29,189	50,770
			소득 있음					23,495	1,000	22,495
(-)	11,189	123,680	(-)	12,495	129,070					
	18A3	고령자		24,799	1,000	23,799	102,100	(+)	32,799	55,440
								(-)	12,799	137,100
	18A4	주거급여수급자		19,578	1,000	18,578	80,400	(+)	25,578	45,400
								(-)	10,578	106,650
	26	주거급여수급자		28,280	1,000	27,280	116,990	(+)	38,280	58,660
								(-)	14,280	157,820
	26B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32,050	1,000	31,050	132,590	(+)	43,050	68,430
			소득 있음					33,936	1,000	32,936
(-)	16,050	179,250	(-)	17,936	187,050					
	26AB	고령자		35,822	1,000	34,822	148,040	(+)	47,822	78,040
								(-)	18,822	197,620

단지명	공급형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청약 구분	공급대상	합계	계약금 (계약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36	주거급여수급자	39,158	1,000	38,158	162,720	(+)	52,158	86,890	
							(-)	20,158	218,130	
	36A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2,211	1,000	51,211	216,960	(+)	70,211	111,960	
							(-)	26,211	292,790	
	36AB1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44,379	1,000	43,379	184,420	(+)	59,379	96,920
			소득 있음					46,990	1,000	45,990
								(-)	22,379	248,580
								(-)	23,990	262,350
	44	주거급여수급자	47,860	1,000	46,860	199,090	(+)	64,860	99,930	
							(-)	24,860	266,170	
	44ABC1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54,241	1,000	53,241	225,630	(+)	73,241	114,800
			소득 있음					57,432	1,000	56,432
							(-)	27,241	304,380	
							(-)	29,432	320,570	
44AB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3,814	1,000	62,814	265,460	(+)	85,814	137,130		
						(-)	32,814	355,870		
경기 광주역	22A	주거급여수급자	32,454	1,000	31,454	125,190	(+)	42,454	66,860	
							(-)	16,454	171,850	
	22B	고령자	41,108	1,000	40,108	159,230	(+)	54,108	83,400	
							(-)	21,108	217,560	
	36A1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57,444	1,000	56,444	222,130	(+)	76,444	111,300
			소득 있음					60,823	1,000	59,823
								(-)	30,823	322,690
								(+)	106,223	157,97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0,223	1,000	79,223	309,630	(-)	40,223	426,290		
						(+)	23,273	36,280		
안산 스마트 허브	1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17,273	1,000	16,273	71,280	(-)	9,273	94,610
			소득 있음					18,290	1,000	17,290
								(-)	9,290	101,730
								(+)	30,688	47,350
	21A1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2,688	1,000	21,688	94,010	(-)	11,688	126,090
			소득 있음					24,023	1,000	23,023
							(-)	12,023	134,540	
							(+)	11,840	19,690	
평택 BIX	16A3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8,840	1,000	7,840	37,190	(-)	4,840	48,850
			소득 있음					9,360	1,000	8,360
								(-)	5,360	51,040
								(+)	15,560	31,190
21A1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11,560	1,000	10,560	54,520	(-)	6,560	69,100	
		소득 있음					12,240	1,000	11,240	57,730
							(-)	6,240	75,230	
							(+)	36,180	63,840	
오산가장	21A,B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소득 없음	26,180	1,000	25,180	122,170	(-)	13,180	160,080
			소득 있음					27,720	1,000	26,720
							(-)	14,720	167,270	
							(+)	60,520	106,950	
의왕역	29A	청년 (자립준비 청년포함)	43,520	1,000	42,520	206,110	(-)	22,520	267,360	

단지명	공급형 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자)	잔금 (업주자)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소득 있음	46,080	1,000	45,080	218,240	(+)	64,080	113,240
			소득 없음	46,080	1,000	45,080	218,240	(-)	23,080	285,320
성남 판교	16A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46,443	1,000	45,443	175,950	(+)	61,443	88,450
			소득 있음	49,175	1,000	48,175	186,300	(-)	23,443	243,030
	26A2B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72,813	1,000	71,813	277,950	(+)	64,175	98,800
			소득 있음	77,097	1,000	76,097	294,300	(-)	25,175	256,300
	26A1	고령자	소득 없음	81,381	1,000	80,381	310,650	(+)	95,813	143,790
			소득 있음	81,381	1,000	80,381	310,650	(-)	36,813	382,950
	26A1	고령자	소득 없음	81,381	1,000	80,381	310,650	(+)	102,097	148,470
			소득 있음	81,381	1,000	80,381	310,650	(-)	39,097	405,130
26A1	고령자	소득 없음	81,381	1,000	80,381	310,650	(+)	107,381	158,990	
		소득 있음	81,381	1,000	80,381	310,650	(-)	41,381	427,310	
성남 하대원	18A	고령자	소득 없음	26,220	1,000	25,220	153,150	(+)	39,220	77,320
	18A	고령자	소득 없음	26,220	1,000	25,220	153,150	(-)	13,220	191,060
	18B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23,460	1,000	22,460	141,660	(+)	35,460	71,660
			소득 있음	24,840	1,000	23,840	150,600	(-)	12,460	173,740
18B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24,840	1,000	23,840	150,600	(+)	36,840	80,600	
		소득 있음	24,840	1,000	23,840	150,600	(-)	12,840	185,600	
판교 2밸리	26C	고령자	소득 없음	80,560	1,000	79,560	303,020	(+)	105,560	157,190
	26C	고령자	소득 없음	80,560	1,000	79,560	303,020	(-)	40,560	419,680
	35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4,180	1,000	93,180	350,140	(+)	124,180	175,14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47,180	487,220
	35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9,720	1,000	98,720	370,730	(+)	130,720	189,90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50,720	513,640
	35B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4,180	1,000	93,180	350,140	(+)	124,180	175,14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47,180	487,220
	35B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9,720	1,000	98,720	370,730	(+)	130,720	189,90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50,720	513,640
	35C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4,180	1,000	93,180	350,140	(+)	124,180	175,14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47,180	487,220
35C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99,720	1,000	98,720	370,730	(+)	130,720	189,900	
		소득 있음	99,720	1,000	98,720	370,730	(-)	50,720	513,640	
평택 고덕	18A	대학생	소득 없음	19,837	1,000	18,837	89,260	(+)	26,837	48,430
	18A	대학생	소득 없음	19,837	1,000	18,837	89,260	(-)	10,837	115,510
	18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19,837	1,000	18,837	89,260	(+)	26,837	48,430
			소득 있음	21,003	1,000	20,003	94,510	(-)	10,837	115,510
	18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21,003	1,000	20,003	94,510	(+)	29,003	47,850
			소득 있음	21,003	1,000	20,003	94,510	(-)	11,003	123,670
	18A2	청년 (주거약자)	소득 없음	19,837	1,000	18,837	89,260	(+)	26,837	48,430
			소득 있음	21,003	1,000	20,003	94,510	(-)	10,837	115,510
	18A2	청년 (주거약자)	소득 없음	21,003	1,000	20,003	94,510	(+)	29,003	47,850
			소득 있음	21,003	1,000	20,003	94,510	(-)	11,003	123,670
	26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28,102	1,000	27,102	126,460	(+)	38,102	68,130
			소득 있음	29,755	1,000	28,755	133,900	(-)	14,102	167,290
26A1	청년 준비 포함 (자립준비 청년)	소득 없음	29,755	1,000	28,755	133,900	(+)	40,755	69,740	
		소득 있음	29,755	1,000	28,755	133,900	(-)	15,755	174,730	
26A1-1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없음	24,796	1,000	23,796	111,580	(+)	33,796	59,080	

단지명	공급형 청약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서)	잔금 (압주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6A1-2	고령자		31,408	1,000	30,408	141,330	(-)	12,796	146,580	
								(+)	43,408	71,330	
	26A2-1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약자)		24,796	1,000	23,796	111,580	(-)	16,408	185,080	
								(+)	33,796	59,080	
	26B	청년	소득 없음	28,102	1,000	27,102	126,460	(+)	38,102	68,130	
								(-)	14,102	167,290	
			소득 있음					(+)	40,755	69,740	
								(-)	15,755	174,730	
	36A3	청년	소득 없음	38,020	1,000	37,020	171,080	(+)	52,020	89,420	
								(-)	19,020	226,490	
			소득 있음					(+)	55,257	93,650	
								(-)	20,257	239,480	
	36A2	청년 (주거약자)	소득 없음	38,020	1,000	37,020	171,080	(+)	52,020	89,420	
								(-)	19,020	226,490	
			소득 있음					(+)	55,257	93,650	
								(-)	20,257	239,48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2,996	1,000	51,996	238,480	(+)	72,996	121,820	
								(-)	26,996	314,310	
	44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45,046	1,000	44,046	202,700	(+)	62,046	103,540	
								(-)	23,046	266,860	
			소득 있음					(+)	65,696	109,630	
								(-)	24,696	281,710	
	용인전	17A1	대학생		31,408	1,000	30,408	120,330	(+)	41,408	62,000
									(-)	16,408	164,080
26A1		대학생		44,633	1,000	43,633	170,170	(+)	58,633	88,510	
								(-)	22,633	234,330	
26A3		주거급여수급자		39,382	1,000	38,382	150,720	(+)	51,382	80,720	
								(-)	20,382	206,130	
26C		고령자 (주거약자)		49,883	1,000	48,883	190,910	(+)	65,883	97,580	
								(-)	25,883	260,91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1,957	1,000	70,957	274,700	(+)	94,957	140,540		
							(-)	36,957	376,780		
36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1,957	1,000	70,957	274,700	(+)	94,957	140,540		
							(-)	36,957	376,780		
36C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1,957	1,000	70,957	274,700	(+)	94,957	140,540		
							(-)	36,957	376,780		
용인덕	17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27,880	1,000	26,880	111,130	(+)	36,880	58,630	
								(-)	14,880	149,040	
			소득 있음					(+)	39,520	59,740	
								(-)	15,520	158,900	
	17B	고령자		31,160	1,000	30,160	123,860	(+)	41,160	65,530	
								(-)	16,160	167,610	
17C	고령자 (주거약자)		31,160	1,000	30,160	123,860	(+)	41,160	65,530		
							(-)	16,160	167,610		
안양 도시형	19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27,540	1,000	26,540	160,650	(+)	40,540	84,820	
								(-)	14,540	198,560	
			소득 있음					(+)	43,160	88,440	
								(-)	15,160	210,930	
동탄2 신동포레	26A1	대학생		37,740	1,000	36,740	166,680	(+)	51,740	85,020	
								(-)	19,740	219,180	

단지명	공급형 청약구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계약서)	잔금 (압주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26A2 26B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37,740	1,000	36,740	166,680	(+)	51,740	85,020	
			소득 있음					39,600			1,000
	26B1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없음	33,000	1,000	32,000	145,750	(+)	45,000	75,750	
			소득 있음					33,000			1,000
	36A 36B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청년 (주거약자)	소득 없음	51,000	1,000	50,000	225,250	(+)	70,000	114,420	
			소득 있음					54,000			1,000
	44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61,200	1,000	60,200	270,300	(+)	84,200	136,140	
			소득 있음					64,800			1,000
	44B 44C 44D 44E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72,000	1,000	71,000	318,000	(+)	99,000	160,500	
			소득 있음					72,000			1,000
	51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82,400	1,000	81,400	363,930	(+)	113,400	183,100	
			소득 있음					82,400			1,000
	이천 하이시티	44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47,600	1,000	46,600	202,300	(+)	64,600	103,140
				소득 있음					50,400		
44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56,000	1,000	55,000	238,000	(+)	76,000	121,340	
			소득 있음					56,000			1,000
44C		고령자	소득 없음	53,200	1,000	52,200	226,100	(+)	72,200	115,270	
			소득 있음					53,200			1,000
양평 남한강	40A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38,080	1,000	37,080	225,300	(+)	57,080	114,470	
			소득 있음					40,320			1,0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없음	44,800	1,000	43,800	265,060	(+)	66,800	136,730		
		소득 있음					44,800			1,000	43,800
연천 BIX	25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18,020	1,000	17,020	109,610	(+)	27,020	57,110	
			소득 있음					19,080			1,000
	25A3	고령자	소득 없음	20,520	1,000	19,520	124,830	(+)	30,520	66,500	
			소득 있음					20,520			1,000
	36A2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25,840	1,000	24,840	157,190	(+)	38,840	81,360	
			소득 있음					27,360			1,000
소득 없음	25,840	1,000	24,840	157,190	(+)	38,840	81,360				
소득 있음	27,360	1,000	26,360	166,430	(-)	14,360	204,340				

- 청약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소수점 이하 절사) 주택구분 범위 내에서 일부 주택(청약구분)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청약구분)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동호배정은 전산추첨 배정하며 3층이하 주거약자 주택등 이 포함 될수 있음) 합니다.
- 최초 공급형에서 계층 전환된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내 설치되는 시설(옵션 포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초 시설의 변경 없이 공급됩니다.

- 계약해지, 예비당첨자 계약포기 등으로 남은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변경된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횟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에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동호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동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 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청년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1개월 전까지 해약 신청하셔야 하며, 주말 및 휴일 퇴거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해지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하며 1개월 이내 비용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의 소명 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적격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수원영통, 하남덕풍, 평택고덕, 용인죽전, 동탄2신동포레)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1인	4,576,036원 이하(120%)	-	-
2인	6,452,897원 이하(110%)	7,039,524원 이하	-
3인	8,168,429원 이하(100%)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100%)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100%)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100%)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p가산)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 수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11,900만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명 이상	13,000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13,000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 대상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 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단지별 1순위

1순위	수원영통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하남덕풍	해당주택 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평택고덕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용인죽전	해당주택 건설지역(용인시) 또는 연접지역(성남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동탄2 신동포레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 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	--

• 그 외 순위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2-1. 청년(수원광교, 안양관양, 화성진안1, 화성진안2 가평청사복합, 수원영통, 양평공흥, 파주병원복합, 광교원천, 하남덕풍, 다산지금A5, 동탄호수공원, 경기광주역, 안산스마트 허브, 평택BIX, 오산가장, 의왕역, 성남판교, 성남하대원, 판교2밸리, 평택고덕, 용인 영덕, 안양도시형, 동탄2신동포레, 이천하이시티, 양평남한강, 연천BIX)

■ 우선공급대상자

<자립준비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당첨자 발표 전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여성가족부의 요청(기관추천 별도 신청 필요)에 의하여, 접수기간에 본인이 청약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대상자의 예비순위보다 우선 배정합니다.
- ※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한 사람 중 자격검증 기간 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됩니다.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수기계약을 하며, 이에 따라 임대 센터(또는 공급센터)가 위치한 현장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 ※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1인	4,576,036원 이하	-	-

경우 (세대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본인 기준)		4,576,03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p가산)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④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 수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27,600만원 이하	4,996만원 이하
	2명 이상	30,1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30,1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25,1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우선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대상자의 예비순위보다 우선 배정합니다.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청년의 경우 **소득 있음/없음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의 해당세대란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단지별 1순위

1순위	수원광교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안양관양	해당주택 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화성진안1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화성진안2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가평청사 복합	해당주택 건설지역(가평군) 또는 연접지역(남양주시, 양평군, 포천시,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수원영통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양평공흥	해당주택 건설지역(양평군) 또는 연접지역(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파주병원 복합	해당주택 건설지역(파주시) 또는 연접지역(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광고원천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하남덕풍	해당주택 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다산 지급A5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동탄 호수공원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경기 광주역	해당주택 건설지역(광주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인산 스마트허브	해당주택 건설지역(안산시) 또는 연접지역(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평택BIX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오산가장	해당주택 건설지역(오산시) 또는 연접지역(평택시, 화성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의왕역	해당주택 건설지역(의왕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성남판교	해당주택 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성남 하대원	해당주택 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판교2밸리	해당주택 건설지역(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평택고덕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용인죽전	해당주택 건설지역(용인시) 또는 연접지역(성남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용인영덕	해당주택 건설지역(용인시) 또는 연접지역(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안양 도시형	해당주택 건설지역(안양시) 또는 연접지역(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동탄2 신동포레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이천 하이시티	해당주택 건설지역(이천시) 또는 연접지역(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시, 음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양평 남한강	해당주택 건설지역(양평군) 또는 연접지역(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연천BIX	해당 주택건설지역(연천군) 또는 연접지역(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철원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그 외 순위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2-2. 청년(주거약자)(광고원천, 평택고덕, 동탄2신동포레)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청년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자.
-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 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수원광고,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하남덕풍, 다산지금A5, 동탄호수공원, 경기광주역, 평택고덕, 용인죽전, 동탄2신동포레, 이천하이시티, 양평남한강)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①-⑦)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⑥)을 모두 갖춘 자

- ①-⑦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⑤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부부는 120퍼센트 이하)
- ※ 단, 가구원수가 2인의 경우에는 일반 110퍼센트, 맞벌이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 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일반	맞벌이 부부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2인	6,452,897원 이하	7,626,151원 이하	7,039,524원 이하	-	-	-
3인	8,168,429원 이하	9,802,115원 이하	8,985,272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p가산)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 수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37,900만원 이하	4,996만원 이하
	2명 이상	41,3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41,3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34,5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의 해당세대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단지별 1순위**

1 순 위	수원광고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가평청사복합	해당주택 건설지역(가평군) 또는 연접지역(남양주시, 양평군, 포천시,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파주병원복합	해당주택 건설지역(파주시) 또는 연접지역(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하남덕풍	해당주택 건설지역(하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다산지금A5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동탄호수공원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경기광주역	해당주택 건설지역(광주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성남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평택고덕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용인죽전	해당주택 건설지역(용인시) 또는 연접지역(성남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동탄2신동포레	해당주택 건설지역(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이천하이시티	해당주택 건설지역(이천시) 또는 연접지역(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시, 음성군)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양평남한강	해당주택 건설지역(양평군) 또는 연접지역(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시,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그 외 순위**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 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 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4-1. 주거급여수급자(광고원천, 하남덕풍, 다산지금A5, 동탄호수공원, 경기광주역, 평택고덕, 용인죽전, 동탄2신동포레)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공고일(2026.04.23.)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4-2. 주거급여수급자(주거약자)(평택고덕)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애훈,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자.
- 중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총 자산가액 수정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1. 고령자(수원광고, 수원영통, 양평공흥, 파주병원복합, 광고원천, 다산지금A5, 동탄호수공원, 경기광주역, 성남판교, 성남하대원, 판교2밸리, 평택고덕, 용인영덕, 이천하이시티, 연천BIX)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 1961.04.23. 포함 이전 출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1인	4,576,036원 이하(120%)	-	-
2인	6,452,897원 이하(110%)	7,039,524원 이하	-
3인	8,168,429원 이하(100%)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100%)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100%)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100%)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p가산)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③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 수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37,900만원 이하	4,996만원 이하
	2명 이상	41,3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41,300만원 이하	5,451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34,500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고령자'의 해당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2. 고령자(주거약자)(용인죽전, 용인영덕)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23.) 현재 고령자의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자.
-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등
인터넷 청약 접수	05.04.(월) 10:00 ~ 05.08.(금) 17:00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9. 위치 안내] 참조) ※ 현장접수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지참 ※ 청약접수기간 중 24시간 인터넷신청가능
예비입주자 발표	5.20.(수) 17:00 이후	
자격 심사 서류접수 마감	05.21.(목) ~ 05.29(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 제출처(등기우편) : [9. 위치 안내] 참조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배송조회(등기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조사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예비입주 적격자 발표	08.27(목)까지 개별안내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신청시 작성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수신 동의자만 발송 가능)
입주안내	공실 발생 시 개별안내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현장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최종 적격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지정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되므로 청약센터를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및 현장 청약 방법

- < 인터넷 신청자 >
- * 청약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 현장 신청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 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 접수장소 : [9. 위치 안내] 참조

■ 서류제출 방법

- < 인터넷 신청자 >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등기우편) [9. 위치 안내] 참조
(현장접수) [9. 위치 안내] 참조, 접수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 * 준비서류는 아래 '5.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홀림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 신청자 >
- * 접수 시 해당 서류를 현장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청약 절차
-
- ```

 graph LR
 A[1단계
공고선택] --> B[2단계
주택단지
선택]
 B --> C[3단계
신청유형
선택]
 C --> D[4단계
유의사항 및
일반공급선택]
 D --> E[5단계
서약서 작성]
 E --> F[6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이 낮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전 청약신청 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4.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허위인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br>*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br>* 주거급여수급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br>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br>※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2]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br>*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br>*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br>※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br>*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4]                | 대상자 : 예비자로 선정된 자<br>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br>※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각서 [붙임6]                                 | 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각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br>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br>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r><아래 해당자만 제출><br>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br>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br><아래 해당자만 제출><br>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 입양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br>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 출생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br>출생 신고 전에 출생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1통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청년<br>(19세이상~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br><br>국민건강보험공단                                  |
| 사회초년생               | <b>[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b><br>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등<br><br>국민건강보험공단                                |
|                     | <b>[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b><br>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br>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지방고용노동청<br><br>국민연금공단<br><br>국민건강보험공단                   |
|                     | <b>[예술인]</b><br>「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br>예술활동증명서<br>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br>국민연금공단<br><br>국민건강보험공단                    |
|                     | •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br>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br>• (퇴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br>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br>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입주시까지)                                                                                                                                                                                                                                                                          | 아동복지시설<br>가정위탁지원센터<br><br>행정복지센터<br>신청자작성               |
| 청년<br>(아동복지시설)      | [우선공급] 자립준비<br>청년 (아동복지시설)                                                                                                                                                                                                                                                                                                                                                                                                                                                             |                                                         |
| 청년<br>(청소년복지시설)     | [우선공급] 자립준비<br>청년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br><br>신청자작성                                    |
| 청년<br>(주거약자)        | <b>[「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b><br>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br><b>[「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b><br>국가유공자 확인원<br><b>[「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b><br>'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br>'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br><b>[「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b><br>5.18 민주유공자 확인원<br><b>[「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b> | 행정복지센터<br><br><br><br><br><br><br><br><br><br><br>국가보훈부 |

|         |                                                                                                                                                                                                                                                                                                                                                                                                                                                                                                                                 |                                                |
|---------|---------------------------------------------------------------------------------------------------------------------------------------------------------------------------------------------------------------------------------------------------------------------------------------------------------------------------------------------------------------------------------------------------------------------------------------------------------------------------------------------------------------------------------|------------------------------------------------|
|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br><b>총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b><br>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                                                |
|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br>-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지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br>※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br><br>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br>-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br>-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br><br>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br>-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br><br>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br>-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br>-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해당 직장<br><br>국세청<br>해당<br>직장(세무서)<br><br>해당 학교 |
| 대학생     | 재학생<br>-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br>-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14)(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br>졸업예정증명서                                                                                                                                                                                                                                                                                                                                                                                                                    | 해당 대학                                          |
|         | 취업 준비생<br>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해당 학교                                          |
|         | 해당자<br>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br>-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br>-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b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br>·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등<br><br>국민건강보험공단<br>행정복지센터             |
|         | 예비 신혼부부<br>·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12)<br>· 예정 세대구성 확인서(붙임13)<br>·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br>·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br>-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br>※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br>※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b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br><br>국민연금공단 등<br><br>국민건강보험공단         |
|         | 해당자만 제출<br>[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br>·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br>·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지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br>※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 국민연금공단<br>해당 직장                                |

|  |                                                                                                                                                                                                                                                                                                                                                                                                                                                         |                           |
|--|---------------------------------------------------------------------------------------------------------------------------------------------------------------------------------------------------------------------------------------------------------------------------------------------------------------------------------------------------------------------------------------------------------------------------------------------------------|---------------------------|
|  | <p>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li> <li>-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li> </ul> </li> </ul> <p>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li> <li>-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li> </ul> | <p>국세청<br/>해당 직장(세무서)</p> |
|--|---------------------------------------------------------------------------------------------------------------------------------------------------------------------------------------------------------------------------------------------------------------------------------------------------------------------------------------------------------------------------------------------------------------------------------------------------------|---------------------------|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br>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br>② 본인(신청자) 도장<br>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br>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br>*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br>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예비입주자 발표 [2026.05.20.(수) 17:00 이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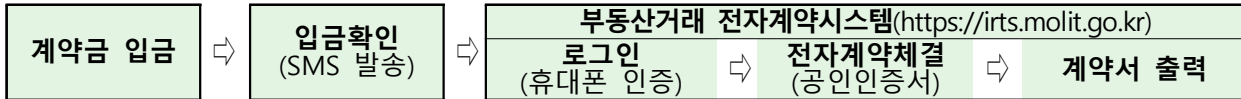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당첨결과조회[당첨자목록] → “예비자 확인”

### ■ 예비입주 적격자 안내 [2026.08.27.(목)까지 개별안내]

- 신청시 작성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 (수신 동의자만 발송 가능)

###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기간 : 공실 발생 시 개별 안내]
- 계약금 입금계좌 : 개인별 보증금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계약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 계약방법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계약 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금증</b><br/>(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li> <li>• <b>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b><br/>(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li> <li>•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li> <li>※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li> <li>• <b>위임장</b>(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li> <li>• <b>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b><br/>(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li> <li>• <b>계약자 인감증명서</b>(본인발급분), 인감도장</li> <li>※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li> </ul> |

##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
| 부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li>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li>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li> <li>채권, 여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li> <li>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
| 총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ul> </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ul>                                                                                                                                                                                                                                                                                                                                                                                                                                                                                                                                                                                                                                                                                                                                                            |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br>-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액 (1)산재보험, (2)고용보험<br>-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b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br>-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br>-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br>-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br>-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행복e음(자활)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한국고용정보원(공공)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br>*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b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br>-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                                                                                                                        |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br>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br>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br>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br>-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br>-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br>-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br>-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br>-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기타 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br>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
|-------------------------------------|---------------------------------------------|----------------------------------------------|
| 부채<br>(총자산 산정 시<br>자산금액<br>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br>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 직권조사 등록                                    |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br>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br>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br>- 지방세정 시가표준액<br>- 국토부 차적정보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     |            |                         |              |     |
|-------------------|-------------------------------------------------------------------------------------------------------------------------------------------------------------------------------------------------------------------------------------------------------------------------------------------------------------------------------------------------------------------------------------------------------------------------------------------------------------------------------------------------------------------------------------------------------------------------------------------------------------------------------------------------------------------------------------------------------------------------------------------------------------------------------------------------------------------------------------------------------------------------------------------------------------------------------------------------------------------------------------------------------------------------------------------------------------------------------------------------------------------------------------------------------------------------------------------------------------------------------------------------------------------------------------------------------------------------------------------------------------------------------------|---------|---------|---------|-----|------------|-------------------------|--------------|-----|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p><b>■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45 300 1431 477">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대학생</td> <td>10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td> <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r> <td>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li> <li>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li> </ul> <p><b>■ 재청약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li> <li>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li> </ul>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청년, 대학생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
|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            |                         |              |     |
| 청년, 대학생           | 10년                                                                                                                                                                                                                                                                                                                                                                                                                                                                                                                                                                                                                                                                                                                                                                                                                                                                                                                                                                                                                                                                                                                                                                                                                                                                                                                                                                                 |         |         |         |     |            |                         |              |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         |         |     |            |                         |              |     |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         |         |         |     |            |                         |              |     |
| 예비입주자             | <p><b>■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li> <li>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         |         |         |     |            |                         |              |     |
| 갱신계약 등            | <p><b>■ 갱신계약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li> <li>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li> <li>*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li> <li>- 청년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li>-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li> </ul> </li> <li>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li> </ul> <p><b>■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li> <li>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li> <li>*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 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li> </ul>                                                                                                                                                                                                                                                                                                         |         |         |         |     |            |                         |              |     |

|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이하       | 110%      | 120%          |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 30%초과       | 130%      | 140%          |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임차인 등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단지 내의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관리 규약 및 단지 여건에 따라 추가차량 등록 허용 여부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각 단지 관리 사무소로 차량등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학생이 소유하거나 전용하는 차량은 고가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등록이 불가합니다.
  - \*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 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4,542만원(부가세 포함), 승용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1.1을 곱한 금액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금액 중 낮은금액 인정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 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별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 모든 GH 소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소유 제한 자동차가액 이상의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제한되며, 1세대 1차량 등록이 원칙입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임대 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및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가 설치·운영되는 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각종 배관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화재감시 및 보안 상의 이유로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및 에어컨 사용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습기를 주의 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대 내부 곰팡이 발생 및 누전 등은 입주민 책임입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불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특정지구의 예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지구 역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입주자격심사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 수원광고 】

- 수원광고 경기행복주택은 총 204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43번(8차선 이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립 한누리유치원, 연암공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봉녕사 승가대학,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우만초등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 서측으로는 40미터(8차선 이상)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립 한누리유치원(17학급 규모)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어린이 등하교시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9대이며, 일반주차 83대, 장애인 4대, 확장형 42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2면은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6기 설치되어 있으며, 3기는 전기차 충전전용, 3기는 혼용주차로 운영중입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6대이며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두 동을 연결하는 2,6,8,10층의 데크브릿지, 피트니스, 육아나눔터, 공중정원 및 102동 10호라인 옆에 층별로 주민공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계절창고, 지하층에는 개별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대지 북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 중정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스프링클러 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유지보수 작업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다수의 부대복리시설(실내어린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워크스테이션, 주민자치실 등)이 102동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101동 입주자들은 브릿지를 통해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층의 실내어린이놀이터는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2층에서 12층까지 매층 2세대씩 총 22세대이며(101동 및 102동 5호),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마련된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실외기실 및 복도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안양관양 】

- 안양관양 경기행복주택은 총 56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47번 (8차선 이상), 지방도 57번(6차선 이상),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공용주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교통안전공단 안양검사소, 안양폐차장, 시립어린이집, 인덕원초등학교, 인덕원중학교, 인덕원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바로 앞에 학익천이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하부로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에 위치한 상가는 분양시설로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일반 업무시설이 가능한 바,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2대이며 일반주차 31대, 확장형주차 17대(여성 및 교통약자 6대 포함), 경차 주차 2대, 장애인주차 2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외에 주차 2면은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상가 주차장은 1대이며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입주자 및 상가, 상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층 공용부에 설치되며 입주 후 에어컨 설치시 시공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용 실외기실 설치공간 실측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되고 보일러는 세대 발코니에 개별설치 됩니다.
- 2층 욕아나눔터, 4층 공동세탁실, 6층 워크스테이션, 8층 휘트니스, 4층 및 5층 개별창고, 각층에 계절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의 지역편의시설은 관양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실로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층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6세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층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 세대(2,3층)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층의 공중정원은 실내 조경시설로 식재 등의 주기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ELEV.홀 및 복도 천장 마감은 없으며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 됩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고령자용 세대는 304호~307호, 404호, 405호로 총 6세대 이고, 주거취약 세대는 406호, 407호, 504~507호로 총 6세대이며,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6㎡ A,B,C,D 타입은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 세대와의 발코니 경계 벽에 경량칸막이 구조의 비상탈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안양관양 행복주택(56세대)은 소규모 단지로서 수원광교 행복주택에서 통합 관리로 운영되는 관리 직원 비상주단지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 화성진안1 】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국도 1번 (6차선 이상),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1호선 병점역, 병점초등학교, 병점중학교, 태안초등학교, 아주산업 병점공장, 태안119안전센터, 진안동주민센터 등이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9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차량 출입통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면 바닥의 지정주차 표지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부가 아닌 옥상에 설치됩니다.
- 2층에 공동주방(오픈키친), 공동거실(오픈리빙), 공동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1층 로비에 세대 당 1개의 락커가 설치됩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运行时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 인근에 수원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비행기에 의한 소음(매일 주/야간 상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성진안1 행복주택(16세대)은 소규모 단지로서 수원광교 행복주택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 화성진안2 】

-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지방도 84번(4차선 이상), 진안초등학교, 진안중학교, 태안초등학교, 병점중학교, 시립어린이집, 태안119안전센터, 병점2동주민센터, 물빛어린이공원, 병점근린공원, 병점시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인접해 있어 주변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임대주택은 소규모로 건립되어 다른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여 관리비(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가 다소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8대이며 일반주차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차량 출입통제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면 바닥의 지정주차 표지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옥상에 일괄 설치됩니다.
- 1층에 계절창고, 2층 공동주방(오픈키친), 3층 공동거실(오픈리빙)은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며 이용시 입주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와 가스계량기는 세대내 소음을 줄이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된 공용 보일러실에 설치됩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지 인근에 수원 공군기지가 위치해 있어, 비행기에 의한 소음(매일 주/야간 상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성진안2 행복주택(15세대)은 소규모 단지로서 수원광교 행복주택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 【 가평청사복합 】

- 전파음역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가평 청사복합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총 4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가평군 제2청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남측으로는 12미터, 북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지상4층에 설치된 가평군 제2청사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32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주차장은 지하2층만 사용 가능하며, 가평군 청사 업무용 주차장과 입주인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인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옥상(휴게공간) 및 지상5~7층 공용공간(오픈키친, 개별창고 및 계절옷장, 공동세탁실)에 계획되어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지상5층 오픈키친 및 외부 휴게공간은 입주인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1층 필로티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입주인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됨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됨
- 고령자 세대는 5층~6층 2세대씩 총 4세대로 계획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부에 전달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대는 가평군 제2청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방재실은 가평군 제2청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부 전기실 근접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5층 외부에 업무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기구로 주방에 역류방지댐퍼, 화장실에는 자동댐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류방지댐퍼(주방)쪽으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함.

## 【 수원영통 】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현관문의 온도차로 결로가 심하여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 각종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드라이창(급기, 배기용) 위치와 크기, 우수 배관의 위치 및 우수용 선흡통의 위치와 개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 훼손 부분은 입주자의 비용으로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 추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원영통 행복주택은 총 10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 등)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사업부지 반경 3km 이내에는 망포역(분당선), 매탄권선역(분당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경기도 농업기술원, 망포고등학교, 망포중학교, 잠원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 북측으로는 20미터(4차선 이상)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서측에 망포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학생 등하교시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6대이며, 일반주차 24대, 장애인 2대, 확장형 16대, 경형 4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되었으나 주차면이 부족한 상태이며,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옥상텃밭, 지상2~5층 공용공간에는 개별창고 및 계절옷장, 지하층에는 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로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옥상에 텃밭이 조성되어 입주민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 및 수원시 규정에 따라 단지출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옥상텃밭의 작물 및 비료 등은 이용하는 세대가 직접 구입하여 재배하여야 하며, 공용시설로 제공되는 일부 시설물외 관련 장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텃밭의 관리는 각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텃밭 및 화단 관리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중정이 있어 저층부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 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환기팬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기구로 주방에 역류방지댐퍼, 화장실에는 자동댐퍼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류방지댐퍼(주방)쪽으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26타입 빌트인 냉장고 고장시에는 입주자의 비용으로 보수하거나 개별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양평공흥 】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녹화되고 있음
- 층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층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는 양평군 중심부권에 자리하여, 사업부지 반경 3km 이내에는 양평군청, 양평역(경의중앙선), 양평시외버스터미널, 양평생활체육공원, 판매시설 등인 인접해 있음
- 단지 서측으로는 25M 도로가 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입주후 사업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판매시설로 인해 소음 및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음
- 양평공흥 행복주택은 총 4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상가)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음.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됨
- 고령자 세대는 2층에 4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관 및 욕실, 발코니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음.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29대이며, 일반주차 17대, 장애인 1대, 확장형 9대, 경형 2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상가 주차장은 총 1대이며 필로티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음. 필로티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옥상에는 옥상조경, 지상2~4층 공용공간에는 오픈키친, 공동세탁실, 개별창고, 계절옷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시설들은 모두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임.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옥상 및 1층의 조경 관리 시 사용하는 상하수 등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주거동의 측면과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변압기함)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현관문과 작은방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심하여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환기팬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 파주병원복합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로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인근학교 학생배치는 금향초등학교, 금릉중학교(금릉중, 금촌중), 금촌중학교(문산중, 파주광일중)임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북측으로는 12미터 도로, 동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 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 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1층~지하 3층에 설치된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행복주택 주차대수는 총 20대(일반형 18대, 경형 1대, 장애인전용 1대)주차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 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행복주택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북측 12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파주병원 인근 부설 주차장 차량 출입 및 주차장 위치는 동측 8M 도로에서 진입하고 지상 1층~지하 3층에 위치하고 있음
- 행복주택 동측으로 파주병원과 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청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면을 충분히 확인하셔야하며 입주 후 시설물 개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방 활동을 위하여 지상 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파주병원복합 경기행복주택은 소규모 세대수로서 관리직원 및 미화직원 등이 비상주로 관리되는 단지입니다.
-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은 특정 요일에 정한 시기에 버려야 하며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해야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1층 필로티 주차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인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 2층 주방/식당(음식제공 등은 없음), 지상6층 세미나실, 취미실, 다목적실, U-HEALTH실 등이 있으며, 시설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사생활 침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 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계단실,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복도 창문 개방으로 인하여 복도 내 소화배관 동파가 우려됨에 따라 혹한 또는 기온 급강하시에는 창문을 필히 닫아야 합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6㎡형은 에어컨실외기가 발코니에 위치하고 있어 에어컨 가동 시 발코니 실내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26㎡형의 실외기 그릴 개방은 에어컨 가동시에만 개방하시기 바랍니다.(동절기 개방 시 수전 등 동파 우려)
- 각 층 복도 등 공용공간에는 개인 물품을 적치할 수 없으며, 장기간 적치 시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처분에 따라 입주인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35B㎡형(4세대)은 주거약자 세대로서 욕실문이 행거형태로 설치되며, 욕실 내에 손잡이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주방용 환기덕트가 세대 내 천정 속에 설치되어 주방후드 가동시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기계실, 방재실은 파주병원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일부 전기실 근접 세대는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환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 점검일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원천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남측으로는 20M도로(4차선), 동측으로는 21M도로(4차선)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주변 현황 사항은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 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신발장 내부 또는 거실/주방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되는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관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마당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 시(화재 등)와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 받은 차량에 한하여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 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수원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 입구에 차량 출입 통제 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동별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27대이며 일반주차 62대, 장애인 4대, 확장형 49대, 경형 12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8대이며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생시설동의 지상층 및 옥상 층이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 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2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전기실 근접 등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습니다.
- 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이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하남덕풍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으로 조성되며, 지상1층 및 지상2층은 하남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며, 하남시에서 관리예정입니다.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1층 일부를 사용합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동측면 지상1층)도 행복주택 주차장과 하남시 공영주차장을 겸용하므로, 이용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복도에 외부와 면한 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 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하남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행복주택주차장용 1개소, 하남시 공영주차장용 1개소로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엘리베이터홀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수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단지 서측 경계부는 외부와 고저차가 발생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79대이며, 행복주택 98대(지상 22대, 지하 76대), 상가 1대(지상), 하남시 공영주차장 80대(지상 80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는 총 6대임)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완속 2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상가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 전원은 한전측으로부터 공급규정에 따라 별도 저압 공급이 되지않으며, 아파트 전기실 변압기에서 공급됩니다.
- 전기실 위치가 지하2층에 시공되며, 전기실 출입문 앞쪽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부분은 시설관리주체가 달라서,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계량기를 전기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 하남시 공영주차장 및 상가 간선은 아파트용 EPS실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및 상가 메인 판넬로 공급됩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3개층(지하1층~지상2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1층 및 지상2층 일부구간을 사용하며, 하남시 공영주차장은 지상1층 및 지상2층을 사용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차 차량 중 18대는 하남시 공영주차장(지상2층)에 주차하게 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1대이며 지상1층 주차장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본 단지 주차장은 행복주택 주차장 및 하남시 공영주차장이 동일 건물내에 공존하므로, 입주자의 주차장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층(5층~12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구내 중계 통신안테나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에 입주인 휴게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가 조성되어 소음 발생 및 경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층부계약시 유의바랍니다.

## 【 다산지급A5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 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펌프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체동작감지센서는 1~2층 및 최상층의 발코니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신 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후면에 설치되며, 전기 세대단자함은 공급유형에 따라 거실/주방/현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비상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주거약자세대 방(침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아래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신발장, 파우더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강마루,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뒷면에는 마감재(타일)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은 발코니 내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시스템 루버 설치로 인해 에어컨 가동시 반드시 루버를 열고 가동해야 합니다. (루버를 닫고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실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열손실 관리를 위해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배관, 에어컨드레인배관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규격 및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남양주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출입구 측면, 부출입구 측면, 모두 4개소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동별 1개소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6407동 옥탑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401동, 6405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2층(피트층)에 중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파 수신상태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피뢰침의 경우 측뢰피뢰침은 각 동 23층~29층 사이에 설치로 인하여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차장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하여 인근동 입주자 및 주변 보행자는 빛 반사 및 미관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15인승/17인승(속도 120m/min)이 설치되며, 옥외 엘리베이터는 15인승(속도 60m/min)의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특성상 운행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및 북측 보행자 통로 경계부 일부는 고저차로 중력식 옹벽이 시공되며, 동측(완충녹지구간 경계부)일부는 조경석쌓기가 조성됩니다.
- 단지울타리는 남측 및 북측 일부구간에 한하여 설치되며, 그 외 구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965대이며, 공동주택 1,941대(지상 508대, 지하 1,433대), 상가 24대(지상)로 구분되어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주차는 총 64대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자동차 출입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 및 지하주차장 내부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급속(2대), 완속(8대)를 지하주차장 2곳으로 나누어서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2개층이고(6401동, 6402동, 6403동, 6404동, 6405동은 지하주차장 1개층 / 6406동, 6407동은 지하주차장 2개층)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24대이며 지상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 동, 세대위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제연설비 가동시(화재발생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통행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바닥 레벨이 지하주차장 바닥보다 1.5m 하향되어 있으며, 전기실 입구 계단 하부실에 집수정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으며(안방, 거실용 매립배관설치), 실외기실 전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401동 지하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6402동에 인접하여 상가가 설치됩니다.
- 6403동 1층 하부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됩니다.
- 6404동 1층 하부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됩니다
- 6407동 지하에 인접하여 지하저수조 및 펌프기계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일부 층(2층부터 9층까지 8개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은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 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와 인접한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내에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동탄호수공원 】

- 단지내 공용공간(행복스퀘어, 드림스퀘어등)은 평소에는 차량진입이 불가하며, 화재등 비상시에만 관리사무소에서 허가 받은 차량에 한해 진입이 가능함
- 단지인근 동탄순환대로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서울 진출입이 용이함
- 북측으로는 20M도로, 동측으로는 16M도로, 서쪽으로는 40M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함 (오산 IC, 기흥 IC 등이 위치함)
- 출근 시간 단지 정문 통과 시 신리IC를 통과하는 차량들과 인근단지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로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허가 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주변현황사항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단지 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림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 진행 함
- 청약 전 단지 여건을 확인 하시기 바람,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도로교통소음과 항공기 소음 피해영향이 있는 지역임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단지명칭, 동번호, CI(Corporate Identity)로고 및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 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부분은 세대별 조건(측세대, 중간세대)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루, 벽지,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 마감자재는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 등의 형태 및 위치, 일부 동 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공용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렛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단지 여건 상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단지 주차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 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한다.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 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도면 및 홍보자료, 홍보문구 등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에 생활 폐기물 보호시설 (12개소) 설치 되어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 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별 지하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개별창고가 있어, 필요시 이용할 수 있음(이용료 발생)
- 각 동의 저층 세대에 방범창이 별도로 설치되지는 않음(각 동 1층 세대에 방충망 자체에 잠금장치 설치)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호수 관계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차량의 단지 출입구는 2개소로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되며 단지내 진입차선이 1차선으로 입주자와 방문자의 차선진입이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입주차량 진입시 불편할 수 있음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 및 수정을 요

구 할 수 없음

- 단지내 공용시설은 세대 위치에 따라 일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3521,3522,3524,3526동 저층세대는 차량 출입 시 안전을 위해 경광등 소음이 발생하니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주차장은 주민주차장과 상가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음
-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세탁실로 인한 소음, 먼지, 냄새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눈부심등의 생활의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각동 3~10층 복도측에 완강기 2개소씩 설치함
- 화재 시 빠른 대응을 위해 세대 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면적이 작은 구조상 감지기가 예민하게(수증기, 음식 조리 시 연기 등) 반응하여 경보음이 울릴 수 있으나, 감지기가 동작하는 것이 정상임. 또한 감지기 오동작 확인을 위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출입에 협조해야 함
- 주차대수는 총 910대 구획되며 (지상 350대, 지하 560대, 장애인주차장 39대 포함) 일부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빗물이 유입되거나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차장 (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단지계획에 따라 동별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방법 및 주차대수 등은 각 동, 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 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2.3m이하(주차공간 2.1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으로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페인트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전기/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함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 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동절기 및 에어컨 사용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세대 내부 곰팡이 발생 등은 입주민 책임임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열공급온도에 따라 개별난방지역보다 추울 수 있고,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 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 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 쪽에 별도로 마련된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에어컨배관은 거실1, 침실1에 시공되어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관의 위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 실외기실 및 복도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수 있고, 실외기실 내부에 우수관이 없는 세대는 우천시 창호를 닫아줘야 비로 인한 피해가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일부세대 하부에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전기실, 우수처리조,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3522,3523동 3층 천장속에 상부층 오배수배관이 설치되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제품은 반드시 전기용량 및 설치 규격을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내 침실 및 거실에 에어컨 설치자리가 정해

- 저 있고 벽걸이 에어컨은 침실만 설치 가능(벽걸이 에어컨 타공 및 물호스 등의 문제로 거실 설치 불가)
-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 1, 2층 및 최상층 세대에만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출입용 RF 카드 및 원패스 카드는 1세대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분실이나 파손 시 일정금액이 청구 됨
  - 분전반 및 통합단자함은 세대간벽 두께로 인하여 동일한 위치에 시공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으며,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승강기는 보양 후 마감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승강기를 통한 입주 및 퇴거 시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보양재를 받아 설치 후 이용하고 보양재 미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등의 문제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등 단지 전용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설비는 매월 일정금액의 통신선로 사용요금이 부과됨
  - 1층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음 1세대당 택배보관소가 1개씩 배치되는 것이 아님(3521동, 3525동, 3526동에 공용으로 설치)
  - 빌트인 가구류는 TYPE별로 설치 기준이 상이하며, 입주전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앞 및 3524동 서편 보행자통로에 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패드스위치가 설치되어 보행에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방송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불편과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세대별 옵션(냉장고, 에어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호 변경이 불가능하니, 계약 전 관리사무소(031-376-4825) 에 연락하여 사전 확인바랍니다.
  - 통신사 중계기 안테나 방향에 따른 사각지대 구간은 휴대폰 통화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퇴거 시 원상 복구가 원칙이며 입주 기간 중 발생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책임이며 퇴거 점검을 통해 원상 복구비가 부과될 수 있음
  - 입주 시 세대 바닥(강화마루), 도배, 가구 등의 찍힘 등 소소한 하자는 감안하여야 함(그렇지 않으면 퇴거 시 상당한 원상 복구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입주 시 난방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요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 요함(입주민 부담)
  - 난방 구동기 및 드레인 밸브(싱크대 하부에 위치)는 임의작동이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음.
  - 18㎡, 26㎡ 타입은 세탁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부득이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 시(베란다 창호의 풍지판이 고정되어 있어 창호 개폐 어려움)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개폐하여야 함. 안전사고,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관리사무소 도움 불가함
  - 애완견과 입주 시 이웃 세대에 양해를 구해야 하며 펫티켓을 잘 지킬 의무가 있음(배변 처리, 짖는 소리, 승강기 이용 시 안고 타는 등) 특히 늦은 시간 짖는 소리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함
  - 입주 청소는 키블출 후 가능함
  - 동절기에는 베란다 청소용 스프레이건(수잔)을 반드시 하부 밸브 잠그고 호스에 남은 물기 제거해 놓아야 함. 동파로 인하여 해당 세대 포함하여 다른 세대에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 책임임
  - 세대 현관 앞이나 복도 등 공용부에 적치물을 둘 수 없음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밤 10시 이후 소음(세탁기,운동기구,청소기,고성방가 등) 발생 및 세대 내 흡연 삼가 바람(외부 흡연 장소 이용)
  - 세대 환기시스템 :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는 입주민 직접 관리 (개별 구매)
  - 난방비 관리 : 구동기 오작동 방치 시 난방비 입주민 부담 (이상 시 즉시 관리사무소 신고)
  - 세탁기건조기 : 우수관만 있는 베란다 설치 절대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원상 복구)

## 【 경기광주역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 부족으로 결로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고장났을 경우 하자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간소음방지 슬리퍼를 신는 등 이웃간 서로 배려하여야 하며, 야간시간(22시~06시)에는 이웃의 생활리듬을 깨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경기광주역경기행복주택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세대분전반, 통합단자함이 거실 또는 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보일러 및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혹서기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의 루버창을 반드시 개방하여 실외기열로 인한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 및 콘센트 등의 위치는 세대간 방음을 위해 위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거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되어 있으며 방문차량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공동현관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되어 있으며 단지 외곽 및 주민편의시설 내에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경비실 등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고, 위치 및 적용개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편의시설로서 맘스테이션, 오픈리빙(실내유아놀이시설),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3실), 유아독서실,계절창고(추첨제)가 있고, 지역편의시설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5개층 마다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도 이용자로 인한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44대이며, 지하 435대(일반 229대, 확장 188대, 장애인 10대, 대형 8대), 지상 9대(근생4대, 지역편의시설 5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하1층 11면에 완속 전기차 충전기 및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구의 유효높이는 2.4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4대이며 지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근생시설동의 지상층이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이용은 경기광주역경기행복주택 관리규약의 지하주차장 운영관리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관리주체의 주차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타워형 세탁기 설치시에는 보일러와 실외기실을 가리게 되어 보일러나 실외기 보수가 필요한 경우 세탁기의 이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장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동절기 영하의 온도에서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배관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은 경량1등급, 중량 3등급으로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시험 성적서의 완충재 자재 기준이며, 사용검사 후 바닥 충격음에 대한 시험결과 성능등급은 각 세대의 측정위치와 측정시간, 주변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설치 전 반드시 임대센터(또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복도 천정에는 소화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소화 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은 커버 또는 천정이 설치될수 있으며, 커버 또는 천정으로 인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2, 36Type 전열교환기가 거실 천정에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안산스마트허브 】

-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총 23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근린생활시설)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임
- 서측으로는 40미터, 남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에 세사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1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115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단지내 총 주차면수는 115면 중, 전기차 충전기는 3기, 환경친화적 주차는 3면, 장애인전용 주차면은 5면
- 세대별 1세대 1차량만 주차 등록이 가능함
- 주차장 진입 및 출차시, 진입로 여건상 차량 인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별 세대 차단기 리모콘 배부하여 사용중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층 부대복리시설 및 각종 공용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 내 북측 좌우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 안 됨
- 주거 약자 형 세대는 동별로 2층~13층 각 층마다 1세대씩 총 24세대로 계획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어 이사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 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 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세대별 옵션(냉장고, 에어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호 변경이 불가능하니, 계약 전 임대센터(031-365-4608) 에 연락하여 사전 확인바랍니다.

## 【 평택BIX 】

- 평택 BIX 경기행복주택은 총 330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아파트)임
- 동측으로는 15미터, 북측으로는 19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에 세사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331대(근생주차 2대 포함)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층~18층 공용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201동, 근린생활시설 우측과 202동 정면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 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 등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됨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운영됨
- 주거약자형 세대는 201동 2층~18층, 202동 2층~17층 1세대씩 총 33세대로 계획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202동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임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함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세대별 옵션(냉장고, 에어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호 변경이 불가능하니, 계약 전 임대담당에 연락하여 사전 확인바랍니다.

## 【 오산가장 】

-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북측으로 25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오피스텔(공공준주택)입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거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4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입주인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6 공용공간(계절옷장, 공용거실, 공용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독서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내 출입구옆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인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형 세대는 2층~6층 1세대씩 총 5세대로 계획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실외기실에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이전 이사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홍보관, 팸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붙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구류는 시설변경 없이 건설된 현시설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세대별 옵션(냉장고, 에어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호 변경이 불가능하니, 계약 전 임대담당에 연락하여 사전 확인바랍니다.

## 【 의왕역 】

- 동측으로는 10미터, 북측으로는 8미터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주택 50세대로 별도의 상주 관리사무소가 없음.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 50세대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이며, 비주거용도(의왕시립 어린이집)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입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거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상1층~지상2층에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으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29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1세대 1차량만 주차 등록이 가능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지상2 공용공간(공용주방, 공용거실, 공용세탁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대지 여건에 따라 단지내 출입구옆에 설치되어있으며, 지정된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화단부근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설치됩니다.
- 1층 주차입구 부근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형 세대는 3층~4층 4세 대씩 총 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의 그릴창 부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에는 설치 불가함
- 세대 신발장하부에 급수 계량기 및 급탕유량계 설치로 신발장 하부 턱이 높게 제작되고 가구지판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사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여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지상 일부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냄새 또는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행복주택 홍보관,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합니다.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 성남판교 】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 및 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동측 : 한화테크윈, 서측: 달팽이 공원, 남측: 도로/디테라스 오피스텔, 북측: 봇들공원) 일부세대는 소음(공원방문객, 단지주변 통행 주민, 자동차 등)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동측 : 한화테크윈, 서측: 달팽이 공원, 남측: 도로/디테라스 오피스텔, 북측: 봇들공원) 및 조경수 등으로 인해 일부세대는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단지의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중앙광장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는 공사 시행 중 품질 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샘플 주택 사용 여부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인근에 성남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비행기에 의한 소음(매일 주/야간 상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주차대수는 총 266대 임(근생 5대 포함)
- 단지내 1층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인해,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한화테크윈, 한화미래연구소 등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출퇴근 시 교통 혼잡 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화재 등 비상시에만 관리사무소에서 허가 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로부터 도보로 15~20분 거리(단지로부터 5분거리에 있는 봇들육교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 가능함)에 판교역이 있어, 서울 진출입이 용이함.
- 단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제2 경인 고속도로 동판교 IC에서 접근이 용이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로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 허가 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 전 단지 여건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명칭, 동번호, CI(Corporate Identity)로고 및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조성되는 조경공간으로 인해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민공동 시설(공동 세탁실, 블록공동시설 등) 이용시, 이용자에게 사용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단지내 시설물(사랑채, 주차장 일부 구간 등)에 대해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 하게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빗물이 유입되거나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발코니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팸플릿, 홍보관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색상, 치수 등이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 부분은 세대별 조건(측세대, 중간세대)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제품은 반드시 전기용량 및 설치 규격을 확인하고 설치하시기 바라며,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타입별로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마련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에서 배출되는 열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난간대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루,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 마감자재는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 등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동측 : 한화테크윈, 서측: 달팽이 공원, 남측: 도로/디테라스 오피스텔, 북측: 봇들공원)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사 전 필히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사다리차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함.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대수, 위치(장애인 주차 포함)는 일부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계획에 따라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공용 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렛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외형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옥탑, 지붕, 입면장식,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관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권권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로고사인, 외부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소음면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설치동(202동) 저층부는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소음 및 매연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내에 쓰레기 수거함, 재활용품 보관소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냄새 및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101동 측면에 크린넷 시설이 설치됨으로 냄새 및 미관 등의 환경 조건을 계약 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노출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각 동 옥상에는 천창이 설치됨으로, 입주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창 주변에서는 주의하기 바람.
-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지하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에 방범창이 별도로 설치되지는 않음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임
- 주방가구, 불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의 경우 상부장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 제품에 따라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가 변경 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호수 관계는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차량의 단지 출입구는 1개소로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됨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없음
- 1층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1세대 당 택배보관소가 1개씩 배정되는 것이 아님)
- 단지 내 공동세탁실, 무인택배실, 자전거보관소, 블록공동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경우 세대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불편 사항이 발생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는 2.3m이하(주차공간 2.1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 바닥에는 열선이 없어 동절기 일부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함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각 동의 저층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202동 저층세대는 차량 출입 시 안전을 위해 경광등 소음이 발생하니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방송안테나, 이동통신 안테나, 피리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빛의 산란 등에 의한 불편과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1, 2층 및 최상층세대에만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출입용 RF 카드 및 원패스 카드는 1세대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분실이나 파손 시 일정금액이 청구 됨
- 옥외 및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에는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전반 및 통합단자함은 세대간벽 두께로 인하여 동일한 위치에 시공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승강기는 보양 후 마감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201동 서편 보행자통로에 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패드스위치가 설치되어 미관저해 및 보행에 다소 불편 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단지 전용 통신회선을 사용하는 설비는 매월 일정금액의 통신선로 사용요금이 부과됨
- 성남판교단지는 LG U+와 홈 IoT 서비스를 체결하였으며, 홈 IoT 서비스를 이용 시 일정금액의 사용료가 부과됨
- 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202동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저층세대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매연, 냄새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성남판교 행복주택과 성남하대원 행복주택(14세대)는 성남판교에서 통합 관리 중이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하대원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음.
- 성남 하대원 단지와 성남판교 단지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됨.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8층 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음
- 각동 천창 인접공간에 동 내부의 실내 채광을 위해, 반사경을 이용한 일조공간제어시스템이 설치됨. 입주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실내에 비춰지는 햇빛이 불편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 할 수는 없음.
- 101동 측벽에는 목재 패널이 일부 시공되며, 목재의 특성에 따라 목재 특유의 향이 발생 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불편을 느낄 수 있음. 또한, 목재의 특성으로 인해 목재 패널이 일부 변형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세대에는 가스레인지 설치 할 수 없으며, 전기레인지가 제공됨.
- 일부 세대에 세탁기 및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탁기 배수관은 싱크대 밑면에 별도의 전용 세탁 배수관에 연결해야 함**
- 101동 옥상층에 텃밭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층의 거주세대에서는 소음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층의 자연채광을 위한 일리오스시설 중 소방방화셔터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경종의 발생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외부에 노출된 201동 202동 세대에서는 실외기실에 조류서식으로 인한 배설물이 발생되면 입주자 퇴거점 검시 청소비용이 부과되니 사전에 침입방지를 위한 그물망(입주 후 아파트너 참고자료 설치방법확인)을 설치하거나 수시로 확인하여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부 실내 공간 및 전용 사용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남하대원 】

- 총 14세대로 구성된 3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모듈러주택(주택유닛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으로 건립되었습니다.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있고,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 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입주 후 청소용역 및 관리용역비 등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직원 비상주에 따라 자전거, 자동차 파손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측은 6미터 도로, 북측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동측은 주택과 인접, 남측은 자동차공업사와 인접되어 있어 소음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간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대로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주차차단 시설이 없음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주출입구 옆 필로티 하부에 5대 설치되어있습니다.
-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옥상(휴게공간) 및 지상 1층 공용공간(공동세탁실, 휴게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 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필로티 하부에 차폐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가 설치되고 주출입구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 주거약자(고령자) 세대는 1층 2세대로 현관 및 욕실 단차는 최소화로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시공 오차로 인하여 세대마다 단차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대 확장형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코니가 없습니다.
- 세대 가스레인지 하부장에 소형세탁기가 설치됩니다.
- 벽걸이 에어컨이 제공됨에 따라 개별 에어컨 설치 불가합니다.
- 거실 창호는 일부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신발장 가운데 통신단자함이 설치되어 실제 사용공간은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맞은편 벽에는 세대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와 돌출입면 사이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등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와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 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창호,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합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요금은 실별 입주자가 개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상 1층의 세탁 및 입주자공동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세탁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용 시 옆, 위층세대 입주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세탁실, 휴게실 등)에 인접한 세대들은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등은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피트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녹지대에 조성한 수목 및 잔디를 훼손하여 개별 세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식재공간으로 쓰레기 투척 및 이삿짐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옥상정원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공용부위 일부 전력 사용을 위한 시설입니다.
- 단지 북측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의 나뭇가지, 낙엽, 과실 등으로 생활에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교2밸리 】 [당해 건축물은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상가 포함)의 복합건축물임]**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및 에어컨 사용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습기를 주의 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세대 내부 곰팡이 발생 및 누전 등은 입주인 책임입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 쓰레기 수거함으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배관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 계량기, 급탕 계량기, 난방 계량기, 전기 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별 전기, 통신 단자함은 거실/주방에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급수, 급탕 분배기 및 온수 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가동 시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설비(렌지후드, 배기구 등)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 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새시는 PVC 재질 등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는 층별 통합이며, 발코니에 통합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조감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지하1, 2층 램프 입구에 주차관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 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 동의 경우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인의 방법을 위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 설비가 설치됩니다.
- 행복주택 지하 1층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 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 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 최상층 및 최하층 2개소에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일반층 및 엘리베이터 홀 창 전체는 고정창임)
- 단지 북측 보행자 통로 경계부는 고저차로 조경석 쌓기가 일부 조성됩니다.
- 주차 대수는 총 467대(행복주택은 258대)이며, 일반 주차 258대, 장애인 10대, 확장형 158대, 경형 23대, 전기자동차 18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 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3개 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진입의 유효 높이 2.7m 이하(지하 1층 일부 통행로 구간은 유효높이가 미확보 될 수 있음), 지하 2, 3층 주차장 진입의 유효 높이는 2.3m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 대수는 법정주차 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에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차로의 차량 입·출차 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 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하부 및 지하 1~3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 램프 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빨래건조대는 가구에 포함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3층 휴게공간은 행복주택 입주자 공동 사용 공간으로 휴게공간 면하는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도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복도식으로 세대 내 자연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식물 등 조리 시 환기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쿡탑(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 내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상가 포함)와 행복주택이 복합으로 시공된 건축물로 일부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보행자도로, 가로수 등)의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가 입주 후 조성공사가 진행되어, 이로 인해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에 인접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 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가 지나가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지나가며,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 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비행안전구역 5·6구역이 있어, 비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1층에 위치한 상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소음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초·중고 설립계획이 없어 학교통학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1구역과 2구역을 연결하는 교량이 입주 후 개통이 될 수 있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남측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대왕판교C와 지구 외 직선거리 2km 이내에 판교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 평택고덕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바닥이 에폭시로 되어있어 우천시 또는 동절기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흡연장소 인접세대의 경우 담배냄새가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실외기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펠로티, 공유정원, 공유주방 등 행복주택 입주자 공동 사용 공간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도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1F 세대만 방범용 방충망이 시공됩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202동, 6203동 옥상 조형물 경관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야간에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가스계량기,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에 전기 및 통신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내부 또는 현관/거실/주방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의 상,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거치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는 배관 유지보수로 인해 천장 석고 마감이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세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세탁실에는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세탁실 불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세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현관문에 결로가 발생하여 도어락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결로로 인한 도어락 고장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 및 환기로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현관문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세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소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문차량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부출입구에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진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경비실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평택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정원의 100분의70을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합니다.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중앙광장에 어린이집 행사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6202동, 6203동 아파트 옥탑에는 중계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계단실 일부층에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엘리베이터 홀 창은 화재 시 자동 폐쇄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62대(근생주차 9대 제외)이며, 일반주차 227대, 장애인 17대, 확장형 235대, 경형 54대, 전기자동차 29대(전기자동차 충전기 완속11대, 급속1대·주차대수 미포함)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9대이며 지상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1대 차량만 등록 가능(대학생 세대 거주가족차량만 등록)하며, 고가차량(4,542만원이상)의 경우 등록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오토바이 전용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203동은 현관입구 앞에 오토바이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출입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전용주차 구역이 협소하여 오토바이 주차 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유 공간에 주차할 수 있으나, 차량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었으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천시 실외기실 루버를 열어놓으면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실외기실 루버를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실외기실 루버를 닫지 않을 시 결로 및 스프링클러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과도한 크기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및 냉장고 설치 가능 사이즈는 평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타입 | 세탁기    |         | 냉장고     |
|----|--------|---------|---------|
|    | W(mm)  | D(mm)   | W(mm)   |
| 18 | 600 이하 | 800 이하  | -       |
| 26 | 600 이하 | 800 이하  | -       |
| 36 | 800 이하 | 850 이하  | 900 이하  |
| 44 | 8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 세탁실 및 냉장고장 사이즈에 설치 가능한 제품을 설치 바랍니다.
- 콘센트 위치의 간섭으로 설치 및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6B형의 경우 복층형 구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에 빌트인 냉장고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옆 세대로의 피난을 유도하는 비상탈출구(실외기실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나,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 1층 현관문 입구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필요시 누구나 사용가능 함)
- 전기, 급수설비 등 정기검사, 긴급보수, 점검 등으로 단전, 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소방, 전기, 급수, 배수의 누수 등 세대 내 시설 점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계량기(난방, 냉수, 온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한방울씩 떨어트리는 등으로 동파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복도 외벽 창문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 동절기 복도 외벽 창문에 별도의 단열재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 노약자시설 등 설치된 시설물등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입주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 인근에 저류시설, 방수시설(빗물펌프장), 전기공급시설(변전소, 케이블헤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상수가압장 및 배수 시설,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설립 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201동 및 6202동은 건너편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하여 주간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8년2월 완공예정)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동측으로 수도권지하철1호선이 지나가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으로는 33미터(8차선 이상)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 용인죽전 】

- 단지 입구 진출입로는 인도가 별도로 없고 차량 통행로와 인도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통행시 차량 및 차단기 작동에 주의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현관문 주변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샤워, 음식물 조리할 때, 빨래 건조, 기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설치된 배선기구, 전등 및 화재감지기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누전이나 화재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보일러와 보일러배관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도 냉매 배관이 실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벽체를 타공해서는 안되며,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하절기 실외기실 루버를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 시 고열로 인한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화재경보 발생, 에어컨 고장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창호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 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홍보물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출입통제관리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동별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용홀 창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2개의 계단실 중 1개는 개폐창호로 설치되며 다른 1개실은 창호가 없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3대이며, 공동주택 49대, 지역편의시설 4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이고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탐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지역편의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에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 차량등록은 자격자에 한하며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비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및 지하1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페인트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등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팬이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타워형 세탁기 설치시에는 보일러와 실외기실을 가리게 되어 보일러나 실외기 보수가 필요한 경우 세탁기의 이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벽체 및 벽지 훼손에 대하여 퇴거 시 원상복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외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근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주변 아파트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로 인한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용인영덕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지함(전기+통신)이 현관 신발장 맞은편 또는 거실/주방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각층 복도에 별도실로 통합 설치 하였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복도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경기도, 용인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모듈러 라멘조,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범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지하1층 주동 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5대이며, 일반주차 49대, 장애인 3대, 근린 3대로 구성, 추가로 전기충전이 가능한 주차면수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항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내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3대이며 지하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옥외주차장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층 복도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11~13층은 옥상대피)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사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 자재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이나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및 납품관련사의 파산으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동질, 동가 수준의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인쇄물의 CG나 이미지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및 인쇄물의 CG나 이미지 자료에는 집기 및 커튼 등 디스플레이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시 상담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철재창호, 목창호, PL창호, AL창호, 가구 및 가전 등은 실제 사용성 고려하여 열림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공용부에 설치되는 타일류는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안양도시형 】

- 안양도시형 경기행복주택은 총 24세대로 구성된 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개별적으로 통보예정입니다.
- 안양도시형 경기행복주택은 총 24세대로 별도의 상주 관리사무소가 없으며, 비상주 관리임.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5대로 법정 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으며, 필로티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1세대 1차량만 주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상 주차장 설치로 저층세대는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인근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현관문 주변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샤워, 음식물 조리할 때,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설치된 배선기구, 전등 및 화재감지기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누전이나 화재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원상 복구가 원칙이며 입주 기간 중 발생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책임이며 퇴거 점검을 통해 원상 복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은 SKT 전용회선입니다.
- CCTV는 주차장 및 출입구에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 옥상에는 텃밭이 운용되고 있어 필요시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공유정원 등 행복주택 입주자 공동 사용 공간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도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동탄2 신동포레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현관문,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331동은 단지출입구에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1동, 2332동은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5동, 2336동 정문쪽 지상1층 출입문이 여단이 방화문이 설치되어 출입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냄새, 실외기 소음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 · 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홍보물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원격계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단자함(분전함, 통신단자함)이 거실·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인증(특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등급) 입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바닥, 뒷면 벽체, 상부 천정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빌트인세탁기 및 빌트인냉장고는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36A, 36B 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에어컨은 공급형(청약구분) 기준 26A1, 26A2, 26B1, 26B2타입에만 설치되며 시공된 상태로 공급된 시설물은 임의로 이동 및 교체가 불가합니다.
- 44A, 44B, 44C, 44D, 44E, 51 타입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현관중문은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가 아닙니다.
- 취사용 가스설비는 51타입에 하이브리드형(전기쿡탑 2구, 가스 1구)으로 설치되고, 기타타입(26A, 26B, 36A, 36B, 36C, 44A, 44B, 44C, 44D, 44E)은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화장실, 현관등의 단차 및 타일 나누기도는 현장여건상 홍보물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의 경우 입주주민의 이동 동선 및 관리자의 관리동선에 의한 세대내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가 축소되어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열고 가동하여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 및 전열교환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원칙상 불가하며, 임의의 못박음이나 드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세탁기실 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설치 위치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 설치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어 원칙상 불가하며, 특히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스탠드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거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경기도, 화성시)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 비상벨, 방송 등을 설치합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우편물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입주자전용,방문자전용)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주출입구에 위치함)=>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입주자전용,상가전용)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홍보물에 표현된 최고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기준으로 작성된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동별 지하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35동, 2336동의 동 출입램프는 후면의 옥외 동출입구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필로티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퍼스널모빌리티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고, 해당시설 입주자 공용사용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퍼스널모빌리티보관함은 설치동의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북측 2333동, 2334동 보행자 통로 경계부는 고저차로 조경식생기 및 콘크리트 옹벽(높이: 최소 1.0M~최대 4.0M)이 일부 조성됩니다.
  - 주차대수는 총 1,071대(세대당 0.71대, 근생 옥외주차 19대, 옥외주차 126대 포함) 이며, 일반주차 450대, 장애인 43대, 확장형 442대, 경형 78대, 평형 4대, 친환경 2대, 전기 52대(급속 4대, 완속48대)로 구분되어 설치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주변, 동출입구 이중주차 금지합니다. 단지 주출입구는 입주자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주차장에는 지붕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는 지하 엘리베이터만 가능, 지상1층, 지하1층 외부 동입구 차량진입 불가(지상1층 동입구 이사로 인한 차량통행 시 보도블럭 침하, 배수트렌치 침하 발생하며, 침하된 시설물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있습니다.) 불가피 하게 지상1층 이사 희망시 대형이삿짐차 또는 사다리차 신청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 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단지 주출입구 지상에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계열로 시공될 예정이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331동, 2341동, 2342동은 전기실과 발전기 및 상가 기계실 근접하여 엔진펌프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등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5km이내 서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주차장과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를 위한 급기구 및 배기구가 각 동 또는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상1층 공동현관문 인근 저층세대는 공동현관문 출입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32동과 2333동 사이의 있는 비상차량 출입구는 평소에 개방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습니다.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42동은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이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단지 경계로 철제난간 또는 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및 토지의 용도 등은 조성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설립 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단지 정문 통과시 신리 IC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인근단지, 대규모 물류단지 차량들로 인하여 혼잡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서측으로 용구대로가 지나가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의 지하1층~지상1층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됩니다. 소음도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이 입주 이후, 설치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331동, 2332동, 2339동, 2340동, 2341동, 2342동의 지하1층~지상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계 기관(경기도, 화성시)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이사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 정문 주차차단기 통과시 도로폭이 많이 협소하니 5km이내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과한 습도발생(제습기, 스팀다리미, 압력밥솥 수증기, 목욕시 수증기, 샤워직후 화장실 문 열었을때 등), 연기발생(음식태우기, 흡연, 세대내 연막소독), 과한먼지 발생 공용부 누수, 결로, 온도차, 결선, 고장 등으로 화재감지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화재수신기 정상작동 상황이며, 입주민은 화재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즉시 대피(관리주체 확인 후 대피하면 초동대피가 늦어서 인명사고 발생우려 있음)해야합니다.
- 디지털 도어락 : 현관문 결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로 디지털도어락 고장날수 있고, 계약자 본인 부담이므로 환기 및 온도관리로 결로예방 해야합니다.
- 산이 인접해 있으므로 뱀, 쥐등 야생동물 나타날수 있습니다.
- 눈비올 때 복도, 계단, 현관입구, 지하주차장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우니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주차장 계단에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눈비올때 지하주차장 바닥에 많은 물이 고일수 있으니,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하여 눈비올때 옥외계단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주차장 바닥 진흙으로 지하주차장이 매우 지저분할 수 있으니 눈비올때 옥외주차장 이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물티슈, 깨진 플라스틱, 행주, 위생용품 등 변기투입으로 오배수관 막히므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흡연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연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등록 대수는 1세대 1차량으로 제한됩니다. (대학생 차량등록 불가)

## 【 이천하이시티 】

### ■ 단지 외부 환경

- 인접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남서측에 사동초등학교 및 북동측에 사동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임차계약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주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조성공사는 시공사의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애, 지장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층별 호수별로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확인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북측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주기장이 위치하며, 입주 후 차량이동에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경충대로(약 15m 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있어 이로인한 차량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에 영동고속도로 방음벽(높이 18m)으로 인하여 저층 일부세대에 조망간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주변 냄새, 병충해, 미관에 관한 내용 또는 유지관리 사항들은 관할 지자체에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부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동식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 및 D/A, 쓰레기집적소 등으로 인한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 1층 주동 출입구 부분 제연덕트 등에 의하여 동선 간섭 및 흰 작동에 따른 소음 및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시선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이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별 이동동선 거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출차경고장치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시야간섭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는 각동마다 지하1층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팜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노출될 수 있고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저층세대에 직접 면하지 않게 계획되어있으나, 일부 세대와 인접한 보관소는 저층세대에서 조망권간섭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필히 계약 전 인허가 도서 등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지하주차장 이용시 일부 동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은 우편물 수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지 중앙광장 대지 레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단지 대지레벨에 의해 우편물 수취함 위치가 상이하하며,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101동에 TV 공청, 위성 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사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지하주차장 및 동별 아파트옥상(102동, 105동 설치 예정)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아파트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단지경계 울타리는 설계, 이천시청의 협의에 따라 미설치 또는 식생울타리 또는 일부난간대 설치 등 변경요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102동 103동 104동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사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관

- 주동 옥탑,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옥외시설물, 문주, 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없이 출연금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옥탑구조물,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리침, 측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동별 특이사항

- 101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상가에서 발생하는 냄새, 소음, 진동, 배기구 돌출구조물, 냉각탑 설치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하주차장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16대)이 계획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동 출입구까지 이동동선이 길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인근세대는 외기의 영향으로 내측세대 대비 난방 및 냉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지하주차장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 기계실이 근접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층 부분에 지상 배기 돌출 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모형 등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전면부에 어린이 놀이터2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

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과 106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세대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이격하기 위한 배치로 동과 동사이에 광장, 어린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중앙 광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각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각 세대간 바라보는 구조로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층 출입시 사다리 및 점검구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여 이동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며, 일반 주차구역에서 동 출입구까지 이동동선이 길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 각 세대의 기본 천장고는 2.3m로 시공됩니다.(허용오차 2% 내외)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하부장 배면에는 배관배선을 위한 주방가구 일부 타공으로 마감재 미설치부위가 노출됩니다.
- 가스쿠포 기본설치로, 인덕션 임의 사용시 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주방 TV용 점검구가 있으며, 점검구 개방시 마감재 미설치 부분과 배선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 및 냉매 매립 배관은 하부(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천정은 별도의 마감미가 없으며, 일부 발코니/실외기실에 대하여는 각종 배관 및 전열교환기 등이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4A1, A2, B, C타입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현관 벽면에 매입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화장실(시스템욕실)의 바닥 / 벽체등의 충격음 울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설치 된 세대 화장실의 양변기 / 세면기의 위치는 설치면 보강이 되어있고,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보강되지 않은 면의 기타 시설물 설치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욕조, 샤워부스부위 제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대피공간, 실외기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스탠드형, 각방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제공 됩니다.
- 타입별 상이하게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위치에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필터는 소모품으로써, 연 1~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교체 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 수량(초기 전열교환기 내부설치분) 외 필터는 소모품으로 입주자의 비용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실외기 등의 설비에 의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대피공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랫집으로 피난할수 있는 설비로 화재시 하향식 피난구 상부도어를 여는 순간 직하 아래 세대에는 홈넷(월패드)와 연동하여 경보가 발생하며 경비실 및 방재실에도 경보음이 발생한다. 하향식 피난구 상부도어를 열고 하부도어를 개폐하여 사다리를 펼쳐서 직하세대로 피난하며 아래세대에서는 하부도어는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향식 피난구 제외세대 : 1층 세대 전체, 아래층이 피로티인 세대(2동 306호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됨)
- 44A1, A2, B, C타입 5층이상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안되며 발코니에 있는 비상탈출벽체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수 있다.
- 세대 내 설치된 주방식탁 등의 위치는 공간계획상 설치된 것이며 입주민의 개인 식탁배치에 의한 식탁 등 위치이동이 불가합니다.
- 조명(거실), 가스, 난방, 환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어가 가능합니다.(추후 주민입주자회의 결정에 따라 유상으로 진행 가능, 임대시 무상 지원 없음)
- 1~2층, 최상층의 경우는 세대 내 아파트 발코니 및 거실, 발코니 확장된 방 등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냉매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인조대리석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장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출입키는 세대 당 4개가 지급 됩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조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시 단지내 조경 및 시설물 등의 배치에 의해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능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반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사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이천의 학교 설립 주체는 유치원초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이천시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는 이천사동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며, 중학생은 효양중학교, 사동중학교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키즈카페, 맘스카페, 멀티룸, 맘스스테이션 등

### 1. 공통사항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인이 운영 및 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안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실외기 설치 구획이 확보되어 있어, 추후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일부 실외기/배기팬/탈취기가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인근 세대에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101동층 지하주차장에 별도로 구획되어 입주자 임의로 소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으며, 입주자용 주차장은 지하1층 별도의 주차차단기를 통해 진입 가능합니다.

### 2. 커뮤니티 시설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내외부 마감 및 디자인은 CG 및 인허가도서 확인 후 임대차 계약을 바라며,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내 전기차 충전공간이 총 3대(급속1개소, 완속2개소) 계획되어있으며, 주차장 중앙 2번램프 주위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상 불편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상~지하1층(지하1층의 경우 소형택배차량에 한함) 주차장으로 진입 및 이동 가능합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으로 동별 주차대수는 일부 불균등 하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가능대수는 총 566대(근린생활시설 16대 별도) 입니다.

### ■ 방음벽 관련 사항

- 당해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거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지과 인접한 국도 및 고속도로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방음벽은 아파트 부대시설로 입주자 관리대상입니다.

## 【 양평남한강 】

###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홍보물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급탕계량기,난방계량기,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지함(전기+통신)이 현관 신발장 내부 또는 거실/주방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 가구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 및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경기도, 양평군)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1개소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주계단실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부계단실은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37대이며, 일반주차 20대, 장애인 2대, 확장형 11대, 경형 3대, 전기차1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 필로티층 주차장으로 1개층이고, 이차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통로는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층 구간에 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지상주차장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하부,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와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포장 및 투수블럭포장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아스팔트포장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전기실, 펌프실 및 저수조등이 설치됩니다.
-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실/보일러실에 비상용 탈출구가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시 파괴하고 옆세대로 대피토록 되어 있으므로 가벽을 막는 물건 적치가 불가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가·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동빨래건조대는 설치됩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사업지구 인근에 저류시설, 방수시설(빗물펌프장), 상수가압장 및 배수시설, 하수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조정, 설립 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훈안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북동측으로 진출입로가 2차선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숲, 하천으로 인하여 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 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습니다.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경기도, 양평군)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 외부공간 보행로, 조경시설물, 식재, 관리자의 관리동선 등으로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변현황

- 주변 500M 반경내 남한강 산책로 및 갈산 양평생활 체육공원, 양평고등학교, 양평군립도서관
- 주변 1KM 반경내 : 대형마트(롯데마트) 양평초등학교, 양평읍사무소
- 주변 1.5KM반경내 양평역, 양평군청,
- 주변 도로 현황 :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인접

## 【 연천BIX 】

###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우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지함(전기+통신)이 거실/주방, 침실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 가구, 욕실장 등의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면대 하부벽체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A타입)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 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사시가 설치되거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치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조경석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필로티 주차장 레벨, 외부 주차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계획과는 다르며, 옥탑부 주동형태, 지붕디자인, 창호 형태 및 색상, 외부색채, 동출입구, 문주, 외부난간형태 및 높이, 벽체 마감자재, 단지조경, 세부식재, 포장계획 등 시공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또는 변경(삭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호수는 관계기관(연천군청)의 협의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1개소에 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됩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 및 무인경비설비가 설치됩니다.
- 입주민의 방법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해 지상주차장에는 비상벨 6개소 설치됩니다.
- 동별 1층 주출입구 부근에 무인택배가 설치되며 위치 및 적용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의 출입제한을 위해 카드리더기가 옥상계단실 내부에 설치됩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복측 및 남측, 동측 보행자 통로 경계부는 고저차로 조경마감이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83대이며, 일반주차(근린생활시설 포함) 78대, 장애인 2대, 전기차 3대로 구분되어 설치되며 향후 인허가과정 중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완속형 충전기가 3개소 설치됩니다.
-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7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불가합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1대이며 옥외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 필로티 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102동 1층에 배치된 세대창고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포장 시공되어 있으며, 차량운행시 날씨(우수 및 눈)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주차장, 주민휴게시설,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102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됩니다.
- 일부세대에서 전주 및 가공전선이 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 과도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천정형이며 1,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되며 거실,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거실 윌패드 조명, 대기전력, 전열, 난방제어기 일체형이며 별도의 스위치는 없습니다.
- 36A 타입 세대 내 발코니에는 전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구조상 일부 세대에 실외기실 내부에 비상탈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 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 주현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6(A) 타입 세대 내 벽걸이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25(A), 25(B), 36(A) 화장실 비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승강기 내부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단지로 주변 공장가동 및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인근 폐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 사업지구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사업지구 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하천으로 인하여 해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시설물 등)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한전 전력기기,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 노상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9. 임대센터 위치안내

| 안 내                                                                                                                                                                                                                                                                               | 위 치                                                                                 |
|-----------------------------------------------------------------------------------------------------------------------------------------------------------------------------------------------------------------------------------------------------------------------------------|-------------------------------------------------------------------------------------|
| <p><b>GH자산관리 수원권 임대센터</b><br/>(수원광교, 안양관양, 수원영통, 광교원천, 성남판교, 성남하대원, 안양도시형)</p> <p>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수원광교 공공실버주택 상가 101호<br/>GH자산관리</p> <p>평일 10:00~17:00<br/>*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p> <p><b>031-548-4741</b></p> <p><b>* 서류 접수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고령자 제외)</b></p>              |   |
| <p><b>경기동북권 임대센터</b><br/>(가평청사복합, 양평공흥, 파주병원복합, 판교2밸리, 이천하이시티, 양평남한강, 연천BIX)</p> <p>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60<br/>하남풍산참아름아파트 407동 1층<br/>GH자산관리(주)<br/>경기동북권 임대센터</p> <p>평일 10:00~17:00<br/>*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p> <p><b>031-795-0457</b></p> <p><b>* 서류 접수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고령자 제외)</b></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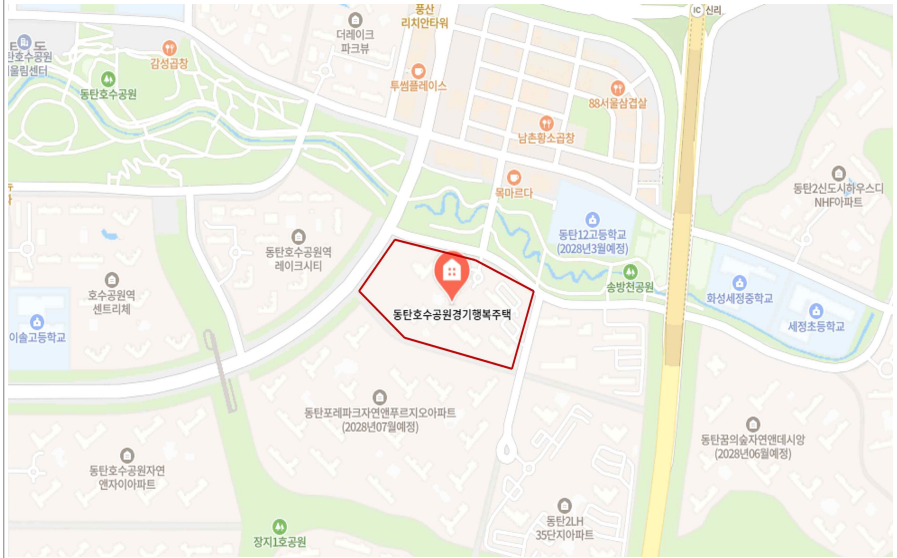
**GH자산관리 화성권  
임대센터**  
(동탄호수공원, 화성진안1,  
화성진안2)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10길 20,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상가 119호 GH자산관리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372-8515**

**\* 서류 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고령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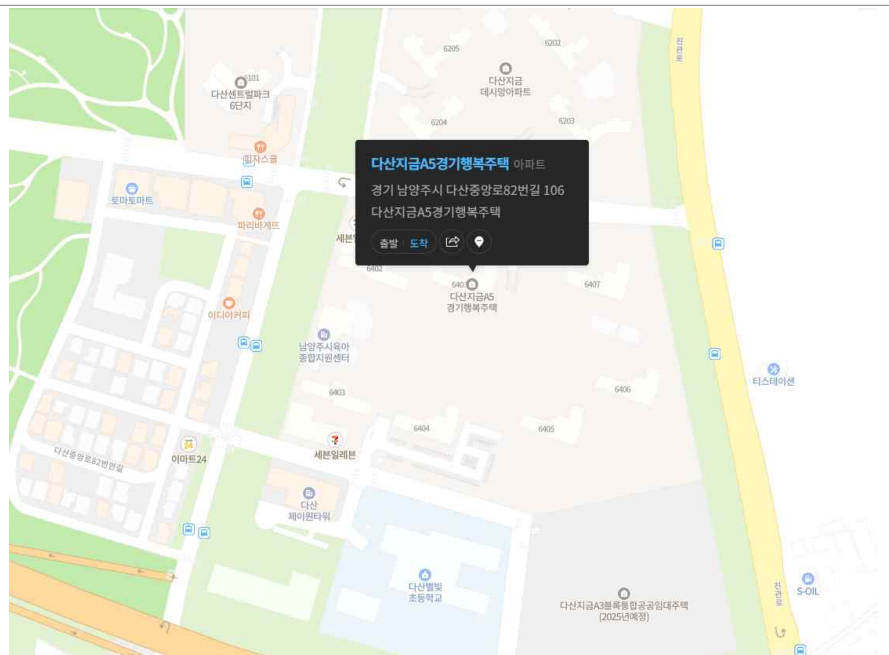


**다산지금A5 ·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06,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6403동 옆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지하층 임대센터

평일 09:00~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다산지금A5 : 031-510-6078**  
**하남덕풍 : 031-510-6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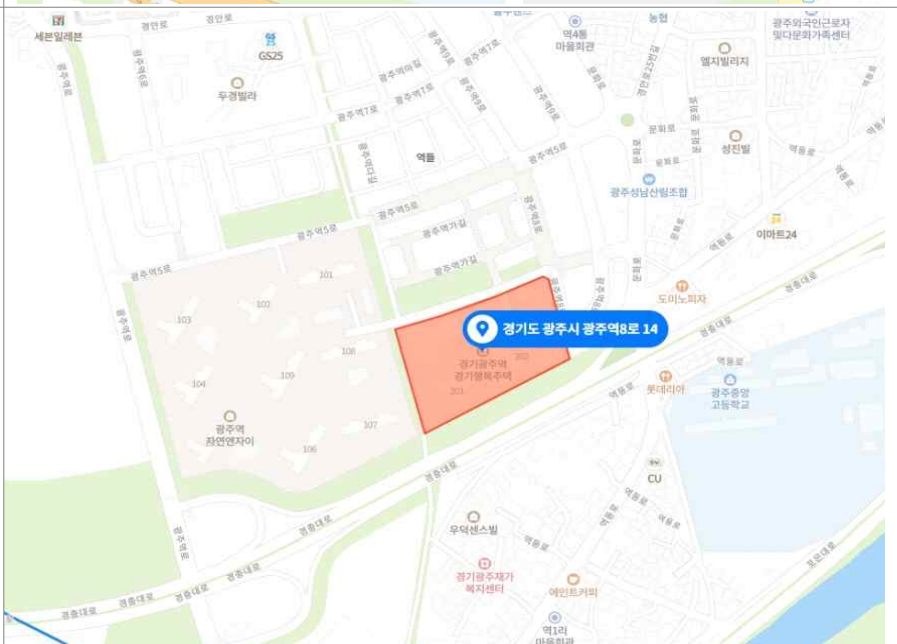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8로 14,  
경기광주역행복주택 임대센터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767-3060**



**안산스마트허브 ·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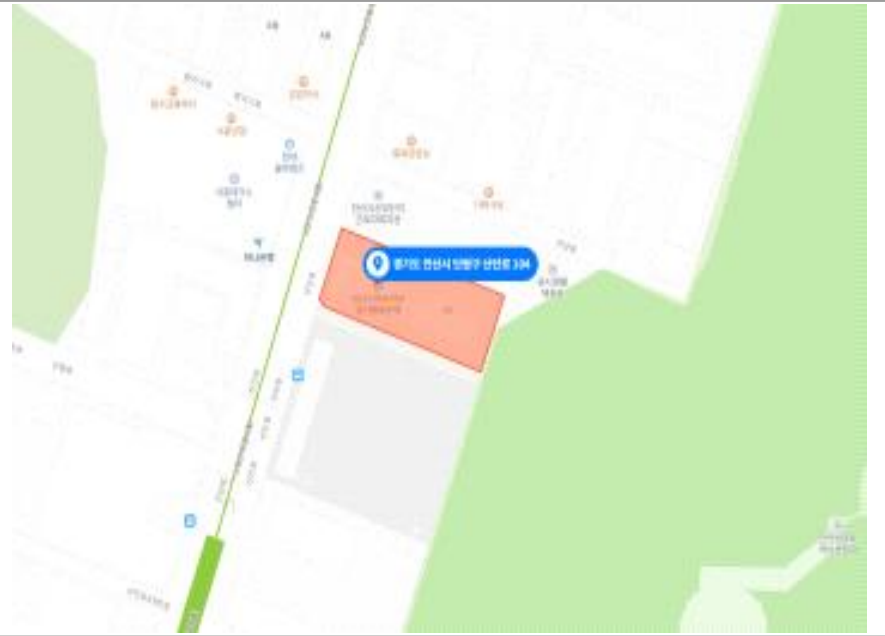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04  
안산스마트허브경기행복주택  
관리사무소 내 임대센터

평일 10:00~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365-4608**

\* 서류 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 2026. 05. 31. 이후  
031-548-4741로 문의



**평택BIX ·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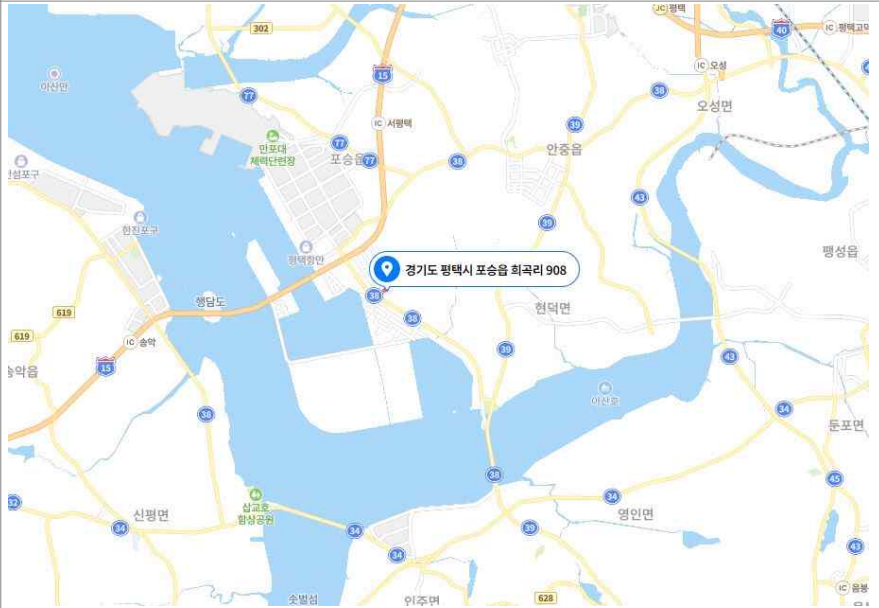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회곡리 908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684-0810**

\* 서류 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 2026. 05. 31. 이후  
031-372-8515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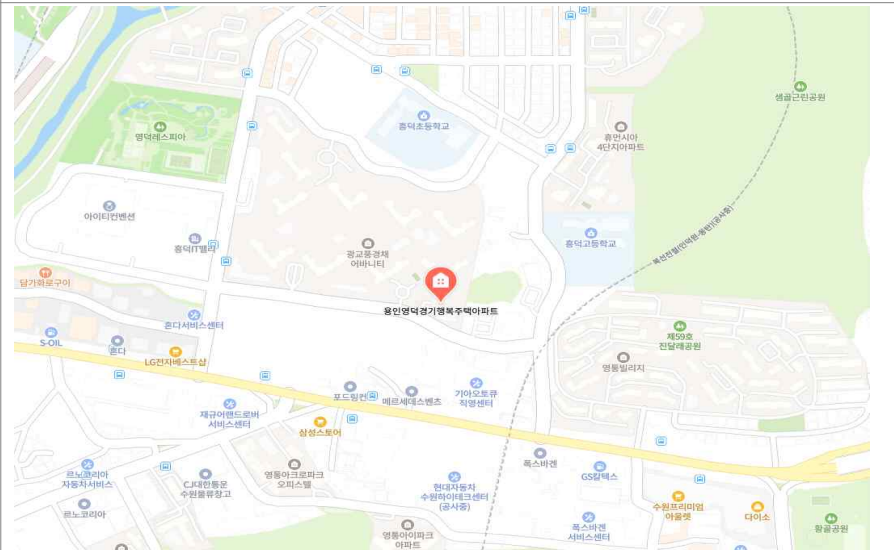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3,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1층 관리사무소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8081-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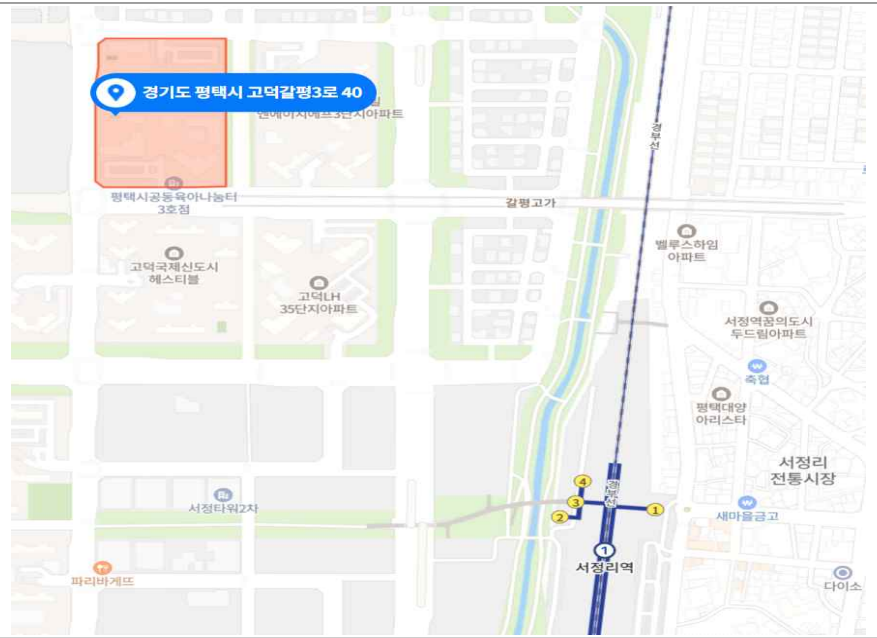


**평택고덕 및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3로 40,  
관리동 2층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31-668-8707**



**동탄2신동포레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화성시 동탄신리천로2길 66,  
동탄2신동포레경기행복주택  
2339동 B1 임대센터

평일 10:00~16: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070-4151-6499**

**\* 서류 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고령자 제외)**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6. 04. 23.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서명        |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서명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br>-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br>-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br>-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br>-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br>- 공적연금 가입내역<br>- 건강보험 가입내역<br>-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br>-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br>-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계약자] 5년**  
 라.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u>국토교통부</u>                                  | <u>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 <u>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u> |
| <u>소득·재산·주택·공공 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u> | <u>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                          |
| <u>사회보장정보원</u>                                |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                          |
| <u>한국부동산원</u>                                 |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u> |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                          |
| <u>우정사업본부</u>                                 | <u>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u>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
| <u>여성가족부</u>                                  | <u>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 포함)한 사람 중 주거지원 필요여부 확인</u> |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                          |

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보유·이용기간                                           |
|----------------------------------------------------------|-----------------------------------------------------|---------------------------------|---------------------------------------------------|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 <u>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u>[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u> |

- 제공 안내

| 제공받는 자                                        | 제공 근거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u>국토교통부</u>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5(금융정보등의 제공, 6(자료요청),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u>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 <u>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 | <u>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u> |
| <u>소득·재산·주택·공공 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u> |                                                                                                                              | <u>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                                                     |                          |
| <u>사회보장정보원</u>                                |                                                                                                                              |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번호<br>앞자리<br>(생년월)일 |  |
|     | 주소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br>관계 |
|----------|---------------------|------------------------------|-----------|----|-----------|-------------|
| 기타<br>자산 | 임차보증금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차인]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수분양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주주(보유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br>출자지분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출자자]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대인]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br>대출<br>(카드론) | 예 <input type="checkbox"/>   |           | 원  | [차주]      |             |
|          |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 제출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란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다음과 같이 필히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신청자와의<br>관 계 | 동의자<br>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br>제공을 동의함 <sup>1)</sup><br>(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br>실을 동의자에게 통보<br>하지 아니함 <sup>2)</sup><br>(서명 또는 인) |
|--------------|------------|--------------------------------|-----------------------------------------------|------------------------------------------------------------------|
| 본인           | 홍길동        | 8 0 0 1 0 1 -<br>1 2 3 4 5 6 7 | 홍길동                                           | 홍길동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자란에 신청자 본인 인적사항 및 서명을 빠트림 없이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붙임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
| 신청자 | 홍길동                           | 4 5 1 0 1 0 -<br>1 1 1 2 2 2 2 |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화성구 화성동 0000, 00동 00호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 신청자와의<br>관 계 | 동의자<br>성 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br>제공을 동의함 <sup>1)</sup><br>(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br>실을 동의자에게<br>통보하지 않는 것에<br>동의함 <sup>2)</sup><br>(서명 또는 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본인           | 홍길동        | 4 5 1 0 1 0 -             | 홍길동                                           | 홍길동                                                                      |
|              |            | 1 1 1 2 2 2 2             |                                               |                                                                          |
|              |            | 0 1 0 - 9 8 7 6 - 5 4 3 2 |                                               |                                                                          |
|              |            |                           |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      |
|--------------|----|------|
| 확인자<br>(임차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본인(또는 배우자)은 ( 신청 단지명 )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행복주택)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적격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 위 입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 위 입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  
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수 입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각 서

계 약 대 상 : [ 신청 단지명 ] 경기행복주택 ( 동 호 )

※ 예비자의 경우 동 호 생략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 (현장신청용)

## 1. 신청자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
|    |      |    |     |

## 2. 신청내용

|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비고 |
|----|----------|----------|----|
|    |          |          |    |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 (현장계약용)

## 1. 계약자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
|    |      |    |     |

## 2. 계약주택

| 지구 | 공급유형(타입) | 공급대상(계층) | 동 호 |
|----|----------|----------|-----|
|    |          |          |     |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        |      |
|-------|--------|------|
| 대상 아동 | 성명     | 생년월일 |
|       | 퇴소 연월일 |      |

|       |         |      |
|-------|---------|------|
| 대상 시설 | 시설명     | 인가번호 |
|       | 주소(소재지) |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
|-------|--|
| 퇴소 사유 |  |
|-------|--|

상기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         |                                                                         |     |     |
|---------|-------------------------------------------------------------------------|-----|-----|
| 모집공고    |                                                                         |     |     |
| 복지시설 종류 |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시설 |     |     |
| 신청주소    |                                                                         |     |     |
| 성 명     |                                                                         | 성별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퇴소 예정일  | 20                                                                      | 년   | 월 일 |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경기행복주택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자격으로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 시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입주 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명 :

생년월일 :

신청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각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